

SOLIDARITY FOR MIGRANTS!!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 5층, 우: 136-041 • TEL: 744-9063 • email: jmk@chollanet, chongt@boradacom.co.kr • http://kot.sing-kr.org/jmk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제

Ma.c.8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운동의 현황과  
연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

**부제 : 아시아 이주노동 활동가 훈련프로그램  
보고대회**

1주제 : 국제규약의 이해와 적용(UN규약, ILO규약)

2주제 : DOCUMENTATION에 대한 이해와 과제

3주제 :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운동의 현황과  
활동가들의 결의

[1998년 3월 25일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강당]



# 월례 심포지움 - 제 1 회

· 자료순서 ·

1. 이주노동 : 개요
  2. 이주민노동자 및 그들 가족의 정의와 인권
  3. 세미나에서 합의한 이주민 개념
  4. 이주민노동자와 관련된 국제조약
  5. 감시, 조사, 문서화
  6. 기록문서-사례연구
  7. 홍콩에 있는 민주단체 방문기
- 부록.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전문)

이 주 노 동 : 개 요

# 이주노동 : 개요

발제자 : *Mayan Villalba*  
필리핀 *Unlad Kabayan* 이주노동자 지원 재단.

## I.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는 경제행위 방식으로서의 이주 —대규모 이주 유형 5단계

- A. 유목경제 — 기원전 2000 년
  - ▶ “목초지를 찾아 유랑생활함”
  - ▶ 정착단계/정착 농경
- B. 제국 건설기 — 기원전 300년
  - ▶ 노예제
  - ▶ 알렉산더 대제의 헬레니즘 문화와 정복시기
  - ▶ “이주”집단에 의해 전파된 문명
  - ▶ 그리스, 아리안, 한족(중국) — 기원전 200년
    - 노예노동의 문명중심지로서의 역이주
- C. 정치 종교적 박해로 인한 이주노동 — 1700년대 후반~1800년대
  - ▶ 미국의 청교도 ; 영국/아일랜드에서 북미까지(백만 이상)
- D. 인구증가 또는 인구감소로 인한 이주노동 -- 식민지 시대와 ‘민족국가’
  - ▶ 카리브지역 스페인 식민지 이주자/정착민 중남미(50만명 가량) — 1500~1650년대
  - ▶ 카리브지역과 미주대륙으로의 아프리카 노예노동 (1500만 이상) — 1550~1850년
  - ▶ “자발적인” 대륙간 이주노동 — 1800~ 1900년대
    - 미주대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유럽인;
    - 호주, 뉴질랜드로의 이주노동 (6000만명)
    -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이주한 러시아인 (1000만명)
    -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인 (1200만명)
    -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로 이주한 일본인 (600만명)
    -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이주한 인디안 계열(150만명)
  - ▶ 노동의 이용 — 1830~1930년대
    - 셀리온, 말레이시아, 기타국가에 이주한 타밀인/인디안
    -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의 영구 식민지( 3000만명 이상)
    - 수마트라이주 일본인, 제일 한국인, 말레이시아 거주 중국인
  - ▶ 식민지 국가의 값싼 노동력 혹은 무임금노동력

- E. 세계화 -- 노동 시장을 포함한 “자유”시장: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 ▶ 1단계 : 유럽, 북미의 산업 성장
    - 미국이주 필리피노와 기타 아시아인
  - ▶ 2단계 :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경제회복 및 재건
    - 서유럽의 “이주 노동자” (1972년 1100만명)
  - ▶ 3단계 : 경제호황
    - 중동, 신흥산업국가, 중국의 연안/남부지역

## II. 자본유치 노동력

- A. 오늘날의 정치경제적 요인
- B. 세계경제의 구조
  - ▶ 북반구 - 산업선진국
  - ▶ 남반구 - 농업국가
  - ▶ 식민모국과 식민지간의 법률관계
  - ▶ 무역관계의 특징
- C. 노동시장구조
  - ▶ 북반구 - 2·3차 산업종사자들이 대다수 차지
    - 1차 산업 종사자의 감소
  - ▶ 남반구 - 1차 산어종사자가 대다수 차지
    - 2·3차 산업종사자 順
  - ▶ 국제통화기금과 개발모델 및 계획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 ▶ 사회적 입법 및 정부의 노동보호
- D. 생산구조와 노동과의 관계

포드주의 모델	Just-In-Time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량생산</li> <li>◆대량고용</li> <li>◆고용안정</li> <li>◆노조, 단체협약(CB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 네트워크 전략</li> <li>◆주문 소량 생산</li> <li>◆계약노동:일자리에 대한 보장없음</li> <li>◆무노조, 무단체 협약</li> </ul>

- ▶ 구조적 실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대응
- ▶ 사회적 책임과 국제 무역 협약의 사회적 합의 (“social clauses”).



### III. 수요에 의한 노동력 공급의 특성규정

<현 노동력 이주의 특징>

- A. 임시직, 단기직, 계약직
- B. "자원자"
- C. 개인 혹은 단체
- D. "문화"와 성별에 따른 일자리

### IV. 이주노동 역학구조

<인력유입·송출 국가간의 영향-도표 참조>

- A. 경제적인 측면
- B. 정치적인 측면
- C. 사회문화적인 측면

### V. 전 세계적 이주노동의 영향 / 현재상황

#### A. 국제경쟁

- ▶ 일자리 손실, 실업, 임금의 차등
- ▶ 기업구조감량
- ▶ 중소기업 도산 유발
- ▶ 중소기업의 저임금 계약노동직 고용 조장
- ▶ 반민중적 사회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비용지출 시행 촉구

#### B. 무역의 자유화

- ▶ 농업과 산업부문의 손실
- ▶ 저임금 국가와의 무역
- ▶ 자력충원의 감소

#### C. 노동의 계약화

- ▶ 무노조, 무단체협약, 무파업
- ▶ 불완전 고용
- ▶ 이주노동유입; 근로기준, 임금, 노동환경 등의 저하
- ▶ 이주노동자와 현지 노동자간의 갈등/긴장
- ▶ 근로협상지위 약화
- ▶ 직업선택의 제한

#### D. 기술상의 변화

- ▶ 일자리감소 증가
- ▶ 숙련노동자에 대한 필요성 증대
- ▶ 교육·(재)훈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비용
- ▶ 임금격차 심화
- ▶ 노동시장구조 변화

#### E. 경제위기

- ▶ 계약노동과 한계노동에 대한 정리

### 이주노동의 역학구조

송출국가	영향	인력수입국*주)
<b>경제적인 측면</b>		
실업	일자리	노동력 부족
저임금	임금 차별	상대적인 '고임금'
환율로 인한 외채증가	국제수지	낮은 사회비용
인력송출기관	사기업	인력알선기관
POEA, SLBFE, 등		KFSB, JITCO, 등
경제수준/소비 향상	인식	경제적인 기여 불인정
<b>정치적인 측면</b>		
노동력 수출 (체계적 송출/자발적 이주)	정책/법률	노동인력 수입정책 (부재; 이중정책/선택적 시행)
대현장 등		보호 법률 규정
송출 증진	정책의 영향	이주노동자의 낮은 지위
OWWA, ?	시행	LD, MOJ, etc.
?	지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낮거나 전무한 사회복지비용
사회적 위기 확산	송출국의 실업문제	노동조합의 반대; 낮은 '정치적'권리/부재
노동시장 점유율	쌍무 협정	본국으로의 송환
관심	협약 비준	무관심/반대
<b>사회문화적인 측면</b>		
양면성; 경제적 선망의 대상	사회적 지위	낮음; 국제적인 대체인력
중산층; 상대적 특권층	사회적 기반/인식	"한계"노동력; 정리해고가 용이한 노동력
?	국민대중의 태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차별
가족/사회구성원의 통합붕괴	영향	사회문제의 희생양

\*주 : 원문에는 Destination country(도착국가)으로 되어있다. 인력수입국(receiving country)라고 할 때 노동의 상품화 경향이 나타나지만 표기와 이해의 용이를 위해서 본 용어를 쓴다.



# 이주민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정의 및 인권

- UN 국제 이주민 조약 기초 -

## 이주민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정의 및 인권

- UN 국제 이주민 조약 기초 -

###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정의

#### ■ 이주노동자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 현재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해온 사람(2조)

#### ■ 이주노동자의 가족

이주노동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법의 적용상 혼인과 다른없는 효력이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 부양하는 자녀 및 기타 피부양자로 관련하는 법 또는 관계국의 이국간 내지 다국간 협정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2. 이주노동자의 범위

#### ■ 월경노동자

인접국에 거주, 적어도 매주 한번은 귀국하는 노동자

#### ■ 계절노동자

일이 계절 조건에 의한 성질을 갖고 일년중 한정된 시기만 취로하는 사람

#### ■ 신원노동자

이주노동자로 고용되어 외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해 취로하는 사람(어업노동자 포함)

#### ■ 해상시설노동자

국적을 갖지 아니한 나라의 관할에 속하는 해상시설에 고용된 사람

#### ■ 문화노동자 순환노동자

어느 한나라에 주소를 갖고 일의 성질상 단기간 다른 나라들에 나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

#### ■ 특정사업노동자

취업국에 의해 고용자가 그 나라에서 행하는 특정의 사업에 한해 취로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입국을 인정 받은 사람



■ 특별취업자

한정된 기간에 특정의 직무/전문직업/단기적, 일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

■ 지역취업자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단독 혹은 가족과 함께 일하여 생계유지하는 사람

### 3. 이주민노동자 예외범위

- 국제기구나 기관에서 파견된 혹은 관할구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외교관 등-일반국제법 내지 특정의 국제적 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사람)
- 어느 한나라 내지 국외에서의 대표로 고용, 파견되어 개발계획과 협력계획에 참가 (입국 및 체류자격이 취업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제)
- 투자가
- 난민, 무국적자
- 학생 및 연수생
- 선원 및 해상시설노동자로 주거나 유급활동 수행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자

### 4. 이주민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인권에 관한 국제합의문서에 따라 영역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의견 기타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떠한 차별도 하지않고 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 확보할 의무를 가진다 ”

이주민 국제조약에 규정되어있는 이주민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은 “국제인권장전”(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기초 :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 조약의 당사국들은 이 규약에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 약속.

### 자유권적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출신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떠나거나 재입국할 수 있는 권리
- 생명에 대한 권리
- 고문, 잔학한 비인도적인 혹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처우 혹은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노예상태 금지
- 강제노동금지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의무 및 책임수반 사항 :
  -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나라의 안전, 공중·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
  - 전쟁선전의 금지/
  - 차별, 적의 혹은 폭력선동이 되는 국민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선전금지
- 사생활, 가족, 주거, 문서 혹은 기타통신에 대해 자의적으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
- 재산탈취를 막을 권리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집단적 추방 금지

### 사회권적 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계약상의 의무 이행할 수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20)
- 여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서류 파기 금지(21)
- 보수,초과근무,노동시간,주휴,유급휴가,안전,보건,고용관계의 종료 등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취업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받지 않을 권리(25조)
- 사적인 고용계약에서 ‘평등처우의 원칙’ 일탈 금지(25)
- 노동조합 및 법률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의 집회 참가 할 권리(26)
-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를 받을 권리(28)
- 소득, 저축 및 가재 소지품 이송할 권리(32)
- 이주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권리
  -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국적에 대한 권리(29)
  -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기초로 교육을 받을 권리(30)



### 등록 이주민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 이동의 자유, 거주지 선택할 자유
- 노동조합 및 기타 단체 결성할 자유
-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공공사항 참가, 선거 및 피선거권 행사할 권리
- 지역사회의 생활 및 운영에 관한 결정시,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과 협의 마땅히 누릴 권리(43)
- 저축, 송금할 권리(47)
- 재류기간을 유급활동의 기간과 최소한 동일하게 허가받을 권리: 취업기간의 만료 이전에 유급활동이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류자격 상실 간주 금지(49)
- 이주노동자의 사망 혹은 혼인해소로 인해 그 가족중에 가족의 동거의 재현을 기초로 재류하고 있던 사람의 재류 허가 배려(50)
- 해고, 고용보험, 실업대책에의 참가, 전직 등의 점에서 '평등처우' 받을 권리(54)
- 추방금지(55)

## 세미나에서 합의한 '이주민' 개념

UN의 정의가 아닌 우리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 세미나에서 합의한 “이주민” 개념

--UN의 정의가 아닌 우리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Seminar's collective definition of Migrant

**Definition (정의) :** 세미나에서 결론 낸 개념 및 정의:

## MIGRANTS ARE (이주민은 아래 있는 것 입니다)--

### I. Job Specific (직업 별로):

#### A. WORKERS (노동자)

- manufacturing (생산), factory (공장), industrial (산업), construction (건설)
- agriculture (농업), fishery (어업), mining (광업),
- services(서비스), domestic workers(가사 노동자), hotel(숙박업), entertainment
- professionals (전문), medical (병원)
- seafarers (선원)
- sex workers/prostituted women (섹스 노동자/매춘여성)\*\*

#### B. NONWORKERS: (비노동자)

- non-wage/non-salary; however, despite lack of formal income, are still doing work(임금/월급 없음; 공식적인 수입이 없는 노동자)
- foreign spouse(외국인 배우자),
- mail-order spouse(우편 중매자에게 주문을 통해 배우자를 얻는 제도)
- ?trainee (?연수생: 연수생도 정식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students (?학생도 아르바이트 하면 ...)

여기서 빠진 것이 2가지 있어요. 이주민이란 것이 무엇인가란 고민 시작할 때 이런 분도 이주민 아닌가 싶었지만, 다시 생각 하니, 우리가 운동하기 위한 이주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람은: (1) aid worker (봉사자), (2) missionary/religious (선교사)

#### C. FAMILIES OF MIGRANTS (이주민의 가족)

### II. STATUS SPECIFIC : (Stayer/Residency Status)

#### A. DOCUMENTED

#### B. UNDOCUMENTED

### III. VULNERABILITY (힘이 약한 것)

- \* 특히, Malaysia에서, sugar plantation이나 rubber plantation 노동자들도 농업에 포함.
- \*\* "sex worker" 이란 표현과 "prostituted women" 이란 표현은 관점의 차이에 따른 다른 개념입니다. 그 개념 차이는, 제가 알기에 이 것입니다: "Prostituted Women"이라고 부르는 관점은 반 인신매매 운동을 기독교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매춘은 다 없어야되며 매춘 여성을 도와주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여성들은 수단적으로 매춘을 하게되었는 의미입니다. "Sex Worker" 이란 표현은, 매춘은 다 없어야되는 것보다, 매춘여성도 노동자이고 노동자 인정과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매춘을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춘 여성동지는 스스로 판단할 것이기에 우리는 "매춘은 사악한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찾고 싶은 분을 돕고, 남아 있는 분은 착취와 싸워나갈 수 있도록(다른 산업의 노동자들과 같은 착취와 여성 착취에 대한 투쟁)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개념정의에 도달 과정

## 합의된 부분

- Migrants** - \* 이주자 \* 정치적 국경을 넘은 자(민족국가, 도시 이주 노동자는 배제).
- \* 시민권/법적 체류권을 가진 국가로부터의 비영구적 이주
  - \* 1.취업 2.결혼 3. 교육 4."문화 교류"(예를 들어 외국에서 온 무용수들)
  - 5.연수생 등을 이유로한 이주

## 논의 사항 :

- (업무상,외국인 노동자운동 개념상의) 이주자는 반드시 노동자이어야 하는가? 국제적인 이주에 계급적 성격의 요소가 함축되 될 필요가 있는가? 경제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스위스 구호단원들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 갔더라도 그들이 이주노동자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공식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기대고 있고, 가정일과 부부생활만을 행하는 mail-order bride<sup>1)</sup>는 어떠한가?
- 예를 들어 홍콩에서 와 가능한 최고의 봉급을 찾아 여러 일자리를 옮겨다니는 미국 주식중개인이나 투자거래자같은 고도의 전문가은 어떠한가? 그들 역시 이주노동자에 포함되는가?
- 외교관이나 외국주둔군은 경우는 또 어떠한가? 그들은 정치적인 경계선을 넘어 시민권이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외교관이나 주한미군과 같은 외국군인을 어떻게 우리의 이주노동자 개념에서 배제할 것인가?
- 피난민과 망명자 또한 그들 모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국가의 시민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르다.
- 국내 이주는 어떤가? (예를 들어 한 국가내의 농경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만약 그러한 국내이주자가 이주노동자 운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같은 "중국"내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중국 본토인들은 어떻게 되는건가? 단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입국허가서(혹은 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의 국경선을 넘는 것으로 간주될수 있는것인가?

##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이주자란 :

국경선을 건너 이동하며, 일을 할 목적으로 혹은 경제적 향상을 목적으로 비내국인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일시 체류하는 사람이다.

1) 결혼알선회사와 같은 곳에서 소개해주어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게되는 후진국동의 여성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사람중 결혼적령을 넘긴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조선족 여성. -- 번역자 주



# 세미나에서 결론 낸 개념 및 정의

Seminar's collective definition of Human Rights

## Human Rights (인권 개념)

1. P/S/C/E(Political 정치, Social 사회, Cultural 문화, Economic 경제적인) Rights 권리  
Right to be free from torture,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s, arbitrary detention, forced labor.  
고문, 잔혹하고 몰인정한 형벌, 멋대로인 구류, 강제 노동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ccess to information, of association, of movement, self-determination, education, housing, health, food, religion, due process, decent livelihood, family/reproduction  
표현의 자유는 권리이고, 정보 접근 할 수 있는 권리, 결사 자유, 이동/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법집행을 받을 권리(미국 헌법 제5조, 제14조),
2. These rights are both as individuals and in a collective  
이 권리들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 적용되어진다.
3. Universal protection of human dignity irrespective of race / creed / gender / sexual orientation/class etc.  
인종, 이념, 성별, 계급과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 Migrants Human Rights (이주노동자의 인권)

All of the human rights listed above plus:  
위에서 언급한 인권의 정의에 덧붙여:

1. Right to demand protection from country of origin and country of destination at all times, including during periods of armed conflict  
본국과 이주국으로부터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양국의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경우도 포함)
2. Right to information on their rights in their native language  
자국어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3. Right to possess/keep all personal documentation  
개인적인 서류(여권 등)를 소유할 권리
4. Reproductive Rights  
모성보호의 권리

5. Right to choose remunerated activity  
공식적인 취업활동의 권리
6. Right to choose (local) place of residence  
거주이전의 권리
7. Right to refuse conditions without penalty  
벌금(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8. Right to remain in country and to work during a grievance process  
문제해결기간 동안 이주국에 남아 노동할 수 있는 권리
9. Right to observe cultural/religious practices (i.e. funeral, worship)  
문화/종교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10. Right to appeal to a "Neutral" or "Independent" body for judicial settlement  
사법적인 문제해결을 공정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권리
11. Right to have mysterious deaths investigated by independent part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의문사 등의 문제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조사받을 권리

## Overall Conference Definition (회의 결론)

Migrants Human Rights--are the same basic, universal human rights: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인권과 같다.

- 1) In their own country--these are their sovereign rights (especially political--e.g. the right to vote, to hold office)  
이주노동자의 본국에서 그들은 모든 권리(특히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2) In the destination country--these rights may be exercis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migrant fulfills certain basic duties of a citizen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국가에서는 그들의 의무에 맞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관련된 국제 조약

##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국제 조약

### <ILO조약>

#### 1. ILO의 기본원칙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독자적인 국제노동기구로서, ①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평화 증진 ②개별적인 해결책보다는 집단(전체)적인 해결책 제시 ③국제노동조건에 관한 기준 마련을 이념으로 1919년 설립.

이는 1919년 1회 총회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평등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채택, 기본원칙으로 '조약각국에서 법률에 의해 정립된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그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공평한 경제적 대우에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

#### 2.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조약

- 1919년 '외국인노동자의 상호대우권고'(25조)
  - 1925년 '재해보상에서의 대우평등조약'(19호)
  - 1935년 '이주노동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에 관한 조약'(48)
  - 1939년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66호)
  - 1939년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조약'(61호)
  - 1949년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조약'(86조)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97조)
  - 1955년 '개발도상국의 이주노동자조약' (100)
  - 1958년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11호)
  - 1962년 '사회보장에서의 대우평등조약' (118)
  - 1975년 '부정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촉진에 관한 조약' (143조)
  - 1975년 '부정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촉진에 관한 권고'(151조)
  - 1982년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에서의 권리유지에 관한 조약' (157)
  - 1982년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에서의 권리유지에 관한 권고' (167)
- ※이 가운데 1949년 채택된 86조/97조, 1958년 채택된 143조/151호 조약이 특히 이주노동자와 관련



### 3. 각 조약의 내용

#### 86조 '고용목적이 이주에 관한 조약'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의 가족은 가능한 한 자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

#### 97조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

- 이주노동자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정책, 법률 및 규칙, 고용과 노동조건 그리고 생활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채택.
- 보수, 사회보장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 모든 노동조건에 대한 자국민과 평등한 대우 및 본국에의 송금보장 규정

※평등대우원칙 적용 분야

1. 임금, 가족수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유급휴가, 가내노동의 제한, 최저연령, 훈련, 여자와 연소자의 노동
2. 노동조합원의 자격과 단체교섭의 이익
3. 숙박시설, 사회보장, 고용관련세, 법적 절차

#### 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직업상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차별대우로 정의하고 회원국은 위의 차별 대우 철폐

#### 143조 '부정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추진에 관한 조약'

- 부당한 중개의 문체와 기회와 대우의 균등 규정
- 부당한 중개 금지, 즉 브로커 등의 이주밀매 금지
- 이주노동자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지않고 그 자유가 정상화될 수 없는 경우(불법체류자 지칭)에 있어서도 보수, 사회보장 및 기타의 급부는 과거의 고용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근거로하여 본인 및 그 가족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 국가의 역할 : 국가는 고용과 직업, 사회보장, 노동조합, 문화적 권리, 개인적 및 집단적 인 자유에 관하여 기회와 대우의 평등 촉진하고 보장하는 정책 행할 것 규정. 특히 세부조항으로 ①외국인노동자가 자기들의 권리와 의무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②이주노동자가 자국의 문화 보전할 것 ③노동조건에 관해 균등대우 보장

#### 151호 조약 '부정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추진에 관한 권고'

- 구체적으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 보장되는 분야 열거: 직업소개, 직업훈련의 기회, 승진, 고용보,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장,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주거 등의 생활조건 등
-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권리를 교육할 것, 고용된 국가의 언어 교육, 출신국 문화 보전 노력 장려 규정
- 불법체류자 역시 노동조합원의 자격과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 추가, 국외 추방시의 비용을 외국인노동자 부담으로 하지않도록 규정

## <UN조약 : 모든 이주민노동자와 그 가족의

##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 1. 배경

- 1975년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보고 "불법적인 밀매거래를 통한 노동력 착취"에 의해 처음으로 관심 주목
- 이 보고서는 세계도처의 이주민노동자의 불안한 지위에 대한 관심과 출신국 혹은 다른 국가에서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게끔 함
-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ILO의 조약 채택에 영향 받음
- 1966년 국제인권장전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선언, 이주노동자 역시 이 규약의 인권에 포괄.
- 1990년 12월 18일, 유엔상임회의에서 모든 이주민과 그의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조약을 승인. 이것은 10여년간의 기나긴 과정속에서 탄생한 커나큰 성과.

### 2) 성격

#### ◆ 의의

- (1) 취업국 혹은 통과국에 체재하는데서 이주민들의 권리가 해당국가의 법적 장치에 보호받지 못함. 따라서 적절한 국제적 보호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채택
- (2) 처음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정의, 범주규명, 이들의 인권을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포괄 확대
- (3)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단위 이상으로 인식, 가족이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이며, 가족과 함께 살수 있는 권리보호
- (4) 신분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는 기본적인 인권 향유할 권리, 더불어 등록, 합법 이주노동자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전 분야에 있어 취업국의 국내법에 의해 동일하게 처우받을 권리
- (5) 전체적으로 국제조약은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착취를 제거,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역할 수행 --> 불법적 취로 기대현상을 감소, 제거



#### ◆ 필요성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남녀 그리고 그들에 수반되어있는 가족들을 포함해 대규모의 이주노동자가 생겨났으며 현재도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 대다수의 국가들은 보내는 혹은 받는 나라의 위치 중 하나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노동자현상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반문제를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으로서, 사회구성원들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취업 혹은 통과상태의 비출신국가에서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종종 법률이나 시민권리조약에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며 착취당한다.

그럼으로 국제적 보호나 일반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 3) 내용

- 이주노동자 및 그의 가족의 정의와 인권: 생략(앞장 참고)
- 국가의 역할 : 국가의 건전하고도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의 정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 (1) 체약국은 노동력의 수요와 자원의 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타의 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 및 이주가 관련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절하게 배려(64)
  - (2) 국제이주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 수행(65)
  - (3) 귀국하고자 하는 이주민 노동자 및 그 가족이 출신국에서 안정된 거주를 재현하는데 적당한 경제환경을 조장하고 출신국에서의 사회, 문화면에서의 영속적인 통합의 재현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관계국간에 적절하게 협력

## 감시, 조사, 문서화



# 감시, 조사, 문서화

## 1. 이주민노동자의 권리침해는 인권침해이다.

###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인권과 인권침해〉

#### • 광의의 인권 의미 :

“모든 인간은 존경받고 발전하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인권과 인권침해에 대한 개념은 그 시대의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문화적 혹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종종 다르게 해석. 사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각기 다른 인권보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건 당연.

#### • 인권침해란 :

인권조항에 관한 국제적인 헌장을 기초로 국가는 개개인과 국가내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존경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책임이 있다.

존경-정부는 개인들의 모임이나 혹은 개인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야만 한다.

보호-정부는 집회와 행동의 자유 혹은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개개인과 집단을 보호하여야만 한다.

실현-정부는 범통치력하에 있는 모든사람들의 필요 즉, 근로의 권리,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른 사회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 •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적당한 법령이나 집행을 통해서 확고히 다져져야만 한다. 정부의 무관심이나 법 혹은 정책입안의 실패는 인권침해와 동등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시행하도록 제정된 법을 어겼을 시는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두가지 상황하에서 정부는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 2. 감시

- 어떻게 이주민노동자의 권리침해를 감시(Monitor)할 것인가?
- 무엇이 “감시” 인가?
- 왜 이주민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지를 “감시” 해야만 하는가?
- 이주민노동자의 권리침해를 “감시”하는 기술과 방법

### 〈정의〉

모니터링(이하 감시)는 특정목적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주의해서 어떠한 것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서, 이를 인권과 연관시키면 ‘개인이나 단체, 혹은 조직이 위협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상황관찰, 자료수집, 보고준비 등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이주민노동자의 인권 감시활동’ 목적〉

-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 국제적 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기록이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 국가 혹은 지역의 이주민노동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 〈감시활동의 요소〉

- 이주와 관련된 정보(사회, 문화, 환경 그리고 정치 등) 수집.  
예) 뉴스클리핑의 경우 아주 좋은 형태
- 이주와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원과의 네트워크형성.  
예) 신문기자, 매체, NGOs, 정부관료, 택시운전사, 상인 등

### 〈감시활동의 대상 및 수집된 정보 처리〉

- 이주민노동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나 사건 모두 포함.  
예) 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 상태, 이주와 관련된 법과 정책 등
- 그러나 각 단위(NGO)가 이주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감시활동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단위가 특정 주제 혹은 문제점을 집중해서 감시활동하는 것이 필요.
- 초기자료(RAW DATA)를 수집, 이를 분류·기록·분석·연구하여야 함

### 〈감시활동의 기술〉

- 다른 지역 단체/개인과의 협력 구축.
-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직접 방문.
- 상황을 보다 더 자세히 혹은 이해하기 위해 이주민과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는 것.



### 3. 조사

- "감시"와 "조사"의 차이
- 이주민노동자의 권리침해는 조사하는 목적
- 이주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방법과 기술
- 이주민노동자의 피해사례를 인터뷰하는 방법 :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

#### 〈정의〉

- 조사는 어떤 문제나 사건 등 상이한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화하는 활동.
- 그러나 경찰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범죄조사와는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인권조사는 사실(Fact)뿐만 아니라 진실(Truth)까지 규명해야 한다.

※ Fact 와 Truth 차이점

#### 〈'이주민의 권리 침해 조사'의 목적〉

- 전체 사회 혹은 특정 상황에서 이주민노동자의 상태 변화시키기 위해
-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기간이 적절한 법/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단체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
- 그 사회에서의 인권의 개념을 터득, 이를 여론화하여 알리기 위해

#### 〈조사의 대상〉

- 각 단체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 해당 문제를 분류할 필요: 개인/집단, 일상적/비일상적 등의 형식으로

#### 〈조사처리〉

- 조사를 수행하기 이전 몇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 a) 특정 문제가 이미 해당 조직에서 관심을 두고 다루어오고 있었던 것인지를 우선 결정 : 만일 아니라면, 적절한 다른 단체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
  - b) 다음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원을 가능한한 망라, 접촉가능한 사람의 명단 작성. 예) 피해자, 친척, 친구, 경찰, 법원, 목격자 등
  - c)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판단, 이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것. 예컨대 그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사건 자체에 대한 정보나 목격자, 피해자의 상태, 정부측의 태도 등의 정보 수집
  - d) 조사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결정, 또한 조사를 수행할 단위 규모 결정, 조사할 구성원과 교육,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사항 결정

#### 〈조사의 필요 요소〉

- 정확하고도 완전한 자료 수집: 일차정보원(희생자, 목격자)와 이차정보원(친척, 이웃, 경찰, 매체 등)으로 구별
- 증거 확보 및 처리 : 공식 서류(문건), 사진, 경찰측 진술 등.
  - 확실한 증거 : 이는 범죄사건에 특히 필수적인 요소. 예) 강간사건시 목격자 뿐만 아니라 의료적 진술 필요. 이 때 의료 진술을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다수의 증거(?): 증거 하나하나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긴 어려우나, 동일한 증거가 수적으로 많을 때를 지칭

#### 〈자료수집 방법〉

##### 1. 면접

Walk-in(사무실면접) : 사무실에서 면접하는 경우. 그러나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Field(현지면접) : 공장, 사고 장소, 피해자의 집 등에서 면접하는 경우

##### 2. FFM(사실발견)

세가지 유형, 사건의 규모면에서 구분. 각 사건별로 연대해야 할 조직의 단위 역시 다름:

- ① Low Level FFM : 작은 유형의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대부분 한 조직내에서 소화 가능
- ② High-Level : 보다 큰 유형의 사건으로 강간이나 고문 등, 이는 다른 조직(다른 단체, 언론, 변호사 등)과의 연대 필요 Interantional: 국제조직과 연대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건(학살, 정리해고, 양심수 문제 등)

##### 3. 사회조사

다수를 대상하는 특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현장조사로써 경제, 정치, 문화 상황속에서 권리침해가 빚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지칭

### 4. 문서정리

- 정의 : 자료형태로서의 증거
- 수집된 각종의 증거는 특정 요구사항을 강력하고도 확실한 법적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화할 필요
- 문서화의 요소
  - a) 정보의 중요성/비중요성 구분 필요
  - b) 정확한 용어 사용



# 기록문서 - 사례 연구

## 기록문서 -- 사례 연구

### 말레이시아 (송출 및 유입국)

발표자 : Aegile Fernandez (Tenaganita)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Tenaganita의 사무총장을 "이주노동자 수용소내에서의 학대, 고문, 반인륜적 대우(1995)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배포한 죄목으로 고소된 상태에 있다. 이는 Tenaganita가 그 보고서를 수용소내의 이주노동자를 더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입의 형태로 작성했던 것 뿐이었다.

그러나 재판으로 Tenaganita 더 정확한 사실조사기록을 해야만 했다.

이것은 역으로 T에게 이주노동자와 말레이시아 시민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갖는지, 말레이시아가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재판절차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운동으로 확산됐다.

#### 배경:

(1)이주노동자가 에이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있는지, (2) 건강문제에 대한 의료 보호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이주로 성적행동의 유형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표준 질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자들은 신뢰를 쌓기위해서 이주노동자들과 가볍게 얘기를 하는 도중 수용소내의 학대에 관한 놀랄만큼 수많은 보고가 있음을 알았다. 이에 Tenaganita는 그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수용소내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반사항들을 기록 확인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고려하면서 정부에게 그 일을 조사할 왕립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권고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지에 대한 제안을 했다.

#### 시행된 다양한 종류의 문서화/조치:

1) 기록은 면접가 메모로 부터 얻은 노트를 포함한다. .

그러한 기록은 법정에서 증거로 되지 않을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주노동자들을 면접했을때, Tenaganita는 이주노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는를 보고, 무엇이 이 슈인지를 찾는다.

2) 언론배포용 구체사례집 : 기자회견문은 수용소내에서의 학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개관하고 있다. : 한 이주노동자는 구부려서 원을 만들어 손과 발로 견도록 100여차례나 강요받았으며, 다른 노동자는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릴 때까지 무릎으로 견도록 강요받았다.

3) 국제적 캠페인을 통한 문서화(기록)



만약 Tenaganita가 이주노동자들이 수용소내에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고 말하는 유일한 단체라면, Tenaganita는 전 이주노동자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Tenaganita는 학대를 기록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 사면 위원회와 인권감시단과 같은 국제 조직을 끌어들였다.

4)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온 편지: 재판이 여론화된후, 이주노동자들은 조금씩 Tenaganita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대를 알리고, 반드시 다뤄져야만 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5) 재판소식지 : 제도언론에 대한 검열의 문제로 인해, Tenaganita는 법정에 앉아 새로운 소식을 전할 "Real Sight"이라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재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일반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이주노동자들의 증언,

7) 팩스, 녹음, 사진 그리고 비디오 기록 : 예를 들어, 정부는 수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식을 하고 있다거나, T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을 통해서 T는 수용자들이 충분한 배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들었으며: 수용수에 하루에 일회 음식을 배달하는 소형버스사진은 그 작은 버스가 4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쓰이는 쌀항아리사진 또한 배급될 식량이 4000명을 먹일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결과:

각국으로 부터의 압력/양해협정(MOU):

다른 나라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제기하기 시작했다. 송출국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만나도록 결정했다. 처음에는 필리핀만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양해 각서를 가졌고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협정이었다. 그러나 캠페인과정중에, 송출국들은 말레이시아 정부 및 실제 MOUs 에 서명한 5개국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 사면:

비록 말레이시아 노동법이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적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사실이 아니다. 인력국은 법과 현실을 보아야만 한다. 또한 이민국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법노동자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만 한다. 말레이시아의 이민국은 등록기간을 정해서 불법노동자들을 적법한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장기 재판이 기록을 켜다. 이 재판을 통해서 Tenaganita 는 (1) 잘못된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기소내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2) 말레이시아 시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위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3) 말레이시아가 실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절차를 가지고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 스리랑카 (송출국)

발표자 : Sarala Emmanuel (여성과 매체 collective)

## 배경:

말리브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238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다. 2년동안 그곳에서 일한후, 공장은 문을 닫았고, 그들은 스리랑카로 돌려보내졌다. 그들중 몇몇은 일년 혹은 일년반, 2년동안 봉급을 받지 못했다. 그 노동자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노동부 장관과 외무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으며 언론에 이것을 highlight했다.

노동부앞에서 2달 반 동안 계속된 항의 데모와 신문계제노력으로, 노동부장관은 다섯명의 조직관련자를 만나기로 합의했다.

결국 스리랑카 해외고용국은 그 사건을 다뤘다.

## 문서 기록:

우리는 이주노동자로 갔던 사람들의 어머니와 딸 등 가족으로 부터 온 편지를 모아서 기록을 작성한다.

## 결과:

지금까지 단지 소수의 노동자만이 보상을 받았다.



## 대만(유입국)

희망공작소(Hope Workers Centre) Peter O'Neill 신부

### 배경:

1997년 6월 23일 <Chinese Federation of Labor in Taiwan>과 <Chinese National Federation of Industry>는 1997년도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구나 이 두 단체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그동안 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서비스부문 이주노동자(가사노동자, 건물관리인 등)에게는 큰 변화가 없지만, 대만 이주노동자의 대다수인 비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만 북부지역의 이주노동자와 지원 활동가들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 서명운동:

회의의 결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또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교육 책자를 타갈로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번역, 발간하였다. 또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전국의 네트워크 그룹은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노동자들과 대만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 항의집회:

이주노동자, 성직자, 대만노동자, 각 지역의 NGO 들은 대만 노동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에 노동위원회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만 의회 내의 실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희망공작소>의 필리핀 노동자는 정부에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 문서:

-최저임금은 왜 인상되어야 하는가 : 인간은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신장되지 않고 오히려 파괴되었다.

-이주노동자는 왜 최저임금제를 보장받아야 하는가

### 결과:

1997년 10월 16일 최저임금은 3.1% 인상되었다.

## 홍콩에 있는 민주단체 방문



## <홍콩에 있는 민주단체 방문>

### AMC (Asian Migrant Centre)

주소 : No. 4 Jordan Road, Kowloon, Hong Kong  
전화 : 852) 2312-0031      팩스 : 852) 2992-0111

1989년 이주민들의 자주적인 조직 지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주민 조직과 지원조직의 강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개발과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적극적인 항의를 통한 여론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외노협의 농성에 굳건한 연대를 보내주기도 했다.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귀향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APMMF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 Filipinos)

주소 : No. 4 Jordan Road, Kowloon, Hong Kong  
전화 : 852) 2723-7536      팩스 : 852) 2735-4559

필리핀에 있는 'Migrante'와 연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필리핀 이주노동자 네트워크이다. 필리핀 노동자를 위한 상담활동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아시아 가사노동자 연합 (Asian Domestic Workers Union; ADWU)

주소 : 5/F., Flat B, Yen Yin Mansion No. 7-10 Ferry Street Yau Ma Tei Kowloon, Hong Kong  
전화 : 852) 2359-4743      팩스 : 852) 2359-4881

홍콩 출입국관리소는 홍콩에는 약 438,000명의 등록된 이주노동자가 있고, 사실상 비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는 없다고 보고하였다.(1996)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스리랑카, 인도 등지에서 홍콩으로 온 여성들은 비록 합법적인 신분이라도 저임금, 강한 노동강도, 임금체불 등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된 가사노동자들의 2~3명중 한명은 아시아가사노동자연합(ADWU)의 회원이다(대략 3,000명 정도). ADWU는 홍콩노총에 가입되어있다.  
그동안 전개했던 주요 활동으로는 1997년 5월 메이데이 행진에 참가하여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4,000홍콩달러로 인상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계속되는 투쟁으로 그해 9월 최저임금은 월 3,750홍콩달러에서 3,860홍콩달러로 인상되었다.

많은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최소한 최저임금인 월 3,860홍콩달러를 받지만 다른 국가에서 온 여성노동자들은 그 보다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여성 이주노동자는 평균 한달에 2,000홍콩달러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보다 낮은 임금으로 필리핀 노동자를 인도네시아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목인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홍콩에 있는 약 170,000명의 가사노동자 중에 필리핀 노동자는 130,000명이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조건개선의 요구는 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투쟁으로 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ADWU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해고된 가사노동자는 직업을 잃은 후 10일 이내에 비자기간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출국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ADWU는 가사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Asia Monitor Resource Center (AMRC)

주소 : 444-446 Nathan Road, 8-B, Kowloon, Hong Kong  
전화 : 852) 2332-1345, 팩스 : 852) 2385-5319

아시아 정책 연구 센터로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인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다. 특히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로는 중국노동자들의 내부이주문제와 자료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성, 교육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 Christian Action: Domestic Helpers and Migrant Workers Programme (전: Helpers for Domestic Helpers "HDH")

주소 : St. Andrew's Church, 138 Nathan Road, Kowloon, Hong Kong  
전화 : 852) 2739-6193, 팩스 : 852) 2724-5309

가사노동자의 노동상담, 생활상담을 해주는곳으로 카톨릭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가사노동자들을 중점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 Christian Industrial Committee (CIC)

홍콩 신공항 건설에 투입되었던 외국인노동자들 대상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지금은 공항건설이 마무리로 인해 전반의 외국인노동자의 상담문제를 하고 있었으며, 이 곳에서 불법체류노



동자의 소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홍콩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 또한 영종도 신공항건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몇 가지부분에서 언급을 하였다. 정부와 협상을 하여 신공항 건설안에 NGO단체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인권유린의 상황을 막는 것과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을 하며 영종동에서 작업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의 단체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여 소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노조를 만들고 자기 또는 다른 노동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인상 깊었으며,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활동이 활발한 것에 한국과 너무 대조적이었고 한국의 단체 또한 이러한 부분에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홍콩노총(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HKCTU)  
19/F., Wing Wong Commercial BLDG., 557-559 Nathan Road, Kowloon, Hong Kong

홍콩노총은 'general scheme'과 'supplementary scheme'를 통해 중국본토에서 홍콩으로 와서 건설현장의 비숙련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을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본토 비숙련노동자의 유입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홍콩노총은 이주가사노동자와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부록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General Assembly

A/RES/45/158  
69th plenary meeting  
18 December 1990

Reaffirming once more the permanent validity of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set forth in the basic instrument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earing in mind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task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other specialized agencies and in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Reiterating that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an already established body of principles and standards, there is a need to make further efforts to improve the situation and ensure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Recalling its resolution 34/172 of 17 December 1979, in which it decided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open to all Member States to elaborate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Recalling also its resolutions 35/198 of 15 December 1980, 36/160 of 16 December 1981, 37/170 of 17 December 1982, 38/86 of 16 December 1983, 39/102 of 14 December 1984, 40/130 of 13 December 1985, 41/151 of 4 December 1986, 42/140 of 7 December 1987, 43/146 of 8 December 1988 and 44/155 of 15 December 1989, by which it renewed the mandate of the Working Group on the Drafting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nd requested it to continue its work,

Having examined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ts ninth inter-sessional meeting, held from 29 May to 8 June 1990, with a view to completing the remaining articles and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technical revision of the draft Convention entrusted to the Centre for Human Rights of the Secretariat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44/155,

Bearing in mind that the Working Group was able to achieve its goals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entrusted to it by the General Assembly,

1.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Working Group for having concluded the elaboration of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 Adopts and opens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ontained in the annex to the present resolution;

3.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consider signing and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s a matter of priority, and expresses the hope that it will enter into force at an early date;

4.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provide all facilities and assistance necessary for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Convention;

5. Invites United Nations agencie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ntensify their efforts with a view to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the Convention and to promoting understanding thereof;

6.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forty-sixth session a report on the status of the Convention;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basic instruments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ing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aking into account also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set forth in the relevant instruments elabora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especially the 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No. 97), the 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s in Abusive Conditions and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No. 143),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No. 86),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Migrant Workers (No. 151), the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and the Convention concerning Abolition of Forced Labour (No. 105),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ecalling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Declaration of the Four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Slavery Conventions,

Recalling that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s



stated in its Constitution, is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workers when employed in countries other than their own, and bearing in mind the expertise and experience of that organization in matters related to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work done in connection with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n particular in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and in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s well as in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cognizing also the progress made by certain States on a regional or bilateral basis toward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importance and usefulnes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in this field,

Realizing the importance and extent of the migration phenomenon, which involves millions of people and affects a large number of Stat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ware of the impact of the flows of migrant workers on States and people concerned, and desiring to establish norms which may contribute to the harmonization of the attitudes of States through the acceptance of basic principle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vulnerability in which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requently find themselves owing, among other things, to their absence from their State of origin and to the difficulties they may encounter arising from their presence in the State of employment,

Convinced tha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cognized everywhere and therefore require appropriate international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migration is often the cause of serious problems for the members of the families of migrant workers as well as for the workers themselves,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scattering of the family,

Bearing in mind that the human problems involved in migration are even more serious in the case of irregular migration and convinced therefore that appropriate action should be encouraged in order to prevent and eliminate clandestine movements and trafficking in migrant workers, while at the same time assuring the protection of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Considering that workers who are no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are frequently employed under less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than other workers and that certain employers find this an inducement to seek such labour in order to reap the benefits of unfair competition,

Considering also that recourse to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who are in an irregular situation will be discouraged i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re more widely recognized and, moreover, that granting certain additional

rights to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a regular situation will encourage all migrants and employers to respect and comply with the laws and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States concerned,

Convinced, therefore, of the need to bring about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reaffirming and establishing basic norms in a comprehensive convention which could be applied universally, Have agreed as follows:

## PART I

###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The present Convention is applica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after, to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or convict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nationality, age, economic position, property, marital status, birth or other status.

2.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pply during the entire migration proces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ich comprises preparation for migration, departure, transit and the entire period of stay and remunerated activity in the State of employment as well as return to the State of origin or the State of habitual residence.

###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1. The term "migrant worker" refers to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2. (a) The term "frontier worker" refers to a migrant worker who retains his or her habitual residence in a neighbouring State to which he or she normally returns every day or at least once a week;

(b) The term "seasonal worker" refers to a migrant worker whose work by its character is dependent on seasonal conditions and is performed only during part of the year;

(c) The term "seafarer", which includes a fisherman, refers to a migrant worker employed on board a vessel registered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d) The term "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refers to a migrant worker employed on an offshore installation tha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e) The term "itinerant worker" refers to a migrant worker who, having his or her habitual residence in one State, has to travel to another State or States for short periods, owing to the nature of his or her occupation;



(f) The term "project-tied worker" refers to a migrant worker admitted to a State of employment for a defined period to work solely on a specific project being carried out in that State by his or her employer;

(g) The term "specified-employment worker" refers to a migrant worker:

(i)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for a restricted and defined period of time to a State of employment to undertake a specific assignment or duty; or

(ii) Who engages for a restricted and defined period of time in work that requires professional, commercial, technical or other highly specialized skill; or

(iii) Who, upon the request of his or her employer in the State of employment, engages for a restricted and defined period of time in work whose nature is transitory or brief; and who is required to depart from the State of employment either at the expiration of his or her authorized period of stay, or earlier if he or she no longer undertakes that specific assignment or duty or engages in that work;

(h) The term "self-employed worker" refers to a migrant worker who is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otherwise than under a contract of employment and who earns his or her living through this activity normally working alone or together with members of his or her family, and to any other migrant worker recognized as self-employed by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State of employment or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 Article 3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 Persons sent or employ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or persons sent or employed by a State outside its territory to perform official functions, whose admission and status are regulated by general international law or by specific international agreements or conventions;

(b) Persons sent or employed by a State or on its behalf outside its territory who participate in development programmes and other co-operation programmes, whose admission and status are regulated by agreement with the State of employment and who, in accordance with that agreement, are not considered migrant workers;

(c) Persons taking up residence in a State different from their State of origin as investors;

(d)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unless such application is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of, or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force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e) Students and trainees;

(f) Seafarers and workers on an offshore installation who have not been admitted to take up residence and engage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the State of employment.

#### Article 4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members of the family" refers to persons married to migrant workers or having with them a relationship that,

according to applicable law, produces effects equivalent to marriage, as well as their dependent children and other dependent persons who are recognized as members of the family by applicable legislation or applicabl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 Articl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 Are considered as 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 if they are authorized to enter, to stay and to engage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the State of employment pursuant to the law of that State and to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at State is a party;

(b) Are considered as no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if they do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a) of the present article.

#### Articl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The term "State of origin" means the State of which the person concerned is a national;

(b) The term "State of employment" means a State where the migrant worker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as the case may be;

(c) The term "State of transit" means any State through which the person concerned passes on any journey to the State of employment or from the State of employment to the State of origin or the State of habitual residence.

### PART II

####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rights Article 7

States Parties undertak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human right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ithin their territory or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nven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or convict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nationality, age, economic position, property, marital status, birth or other status.

### PART III

#### Human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Article 8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be free to leave any State, including their State of origin. This right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those that are provided by law,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part of the Convention.

2.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at any time to enter and remain in their State of origin.

Article 9 The right to life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be protected by law.

#### Article 10

No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Article 11

1. No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2. No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3.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not be held to preclude, in States where imprisonment with hard labour may be imposed as a punishment for a crime, the performance of hard labour in pursuance of a sentence to such punishment by a competent court.

4.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a) Any work or service not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e present article normally required of a person who is under detention in consequence of a lawful order of a court or of a person during conditional release from such detention;

(b) Any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or calamity threatening the life or well-being of the community;

(c) Any work or service that forms part of normal civil obligations so far as it is imposed also on citizens of the State concerned.

#### Article 12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their choice and freedom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their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2.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not be subject to coercion that would impair their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their choice.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t least one of whom is a migrant worker,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 Article 13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2.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their choice.

3. The exercise of the right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 of others;

(b)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States concerned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c)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y propaganda for war;

(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 Article 14

No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home, correspondence or other communications, 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Each migrant worker and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have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 Article 15

No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property, whether owned individually or in association with others. Where, under the legislation in force in the State of employment, the assets of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are expropriated in whole or in part, the person concerned shall have the right to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 Article 16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2.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be entitled to effective protection by the State against violence, physical injury, threats and intimidation, whether by public officials or by private individuals, groups or institutions.

3. Any verification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of the identity of migrant workers or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law.

4.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not be subjecte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they shall not be deprived of their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s as are established by law.

5.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arrested shall be informed at the time of arrest as far as possible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of the reasons for their arrest and they shall be promptly informed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of any charges against them.

6.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It shall not be the general rule that while awaiting trial they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but release may be subject to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at any other sta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should the occasion arise, for the execution of the judgement.

7. When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is arrested or committed to prison or custody pending trial or is detained in any other manner:

(a) The consular or diplomatic authorities of his or her State of origin or of a State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at State shall, if he or she so requests, be informed without delay of his or her arrest or detention and of the reasons therefor;

(b) The person concerned shall have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said authorities. Any communication by the person concerned to the said authorities shall be forwarded without delay, and he or she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receive communications sent by the said authorities without delay;

(c) The person concerned shall be informed without delay of this right and of rights deriving from relevant treaties, if any, applicable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to correspond and to me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said authorities and to make arrangements with them f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on.

8.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that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their detention and order their release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When they attend such proceedings, they shall have the assistance, if necessary without cost to them, of an interpreter, if they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9.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have been victims of unlawful arrest or detention shall have an enforceable right to compensation.

#### Article 17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for their cultural identity.

2. Accused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e separated from convicted persons and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status as unconvicted persons. Accused juvenile persons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and brought as speedily as possible for adjudication.

3. Any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who is detained in a State of transit or in a State of employment for violation of provisions relating to migration, shall be held, in so far as practicable, separately from convicted persons or persons detained pending trial.

4. During any period of imprisonment in pursuance of a sentence imposed by a court of law, the essential aim of the treatment of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his or her reform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Juvenile offenders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and be accorded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age and legal status.

5. During detention or imprisonment,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enjoy the same rights as nationals to visits by members of their families.

6. Whenever a migrant worker is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concerned shall pay attention to the problems that may be posed for members of his or her family, in particular for spouses and minor children.

7.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subjected to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law in force in the State of employment or in the State of transit shall enjoy the same rights as nationals of those States who are in the same situation.

8. If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is detaine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any infraction of provisions related to migration, he or she shall not bear any costs arising therefrom.

#### Article 18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equality wit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them or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 a suit of law, they shall be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2.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3.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them,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be entitled to the following minimum guarantees:

(a) To be informed promptly and in detail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charge against them;

(b) To have adequate time and facilities for the preparation of their defence and to communicate with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c) To be tried without undue delay;

(d) To be tried in their presence and to defend themselves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of their own choosing; to be informed, if they do not have legal assistance, of this right; and to have legal assistance assigned to them, in any case where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and without payment by them in any such case if they do not have sufficient means to pay;

(e) To examine or have examined the witnesses against them and to obtain the attendance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their behalf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witnesses against them;

(f)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y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court;

(g) Not to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themselves or to confess guilt.

4. In the case of juvenile persons, the procedure shall be such as will take account of their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ir rehabilitation.

5.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onvicted of a crime shall have the right to their conviction and sentence being reviewed by a higher tribunal according to law.

6. When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has, by a final decision,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and when subsequently his or her conviction has been reversed or he or she has been pardoned on the ground that a new or newly discovered fact shows conclusively that there has been a miscarriage of justice, the person who has suffered punishment as a result of such conviction shall be compensated according to law,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non-disclosure of the unknown fact in time is wholly or partly attributable to that person.

7. No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liable to be tried or punished agai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or she has already been finally convicted or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the State concerned.

#### Article 19

1. No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held guilty of any crimi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that did no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the criminal offence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If, subsequent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provision is made by law for the imposition of a lighter penalty, he or she shall benefit thereby.

2. Humanitarian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status of a migrant worker,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his or her right of residence or work,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imposing a sentence for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by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 Article 20

1. No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failure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

2. No migrant worker or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authorization of residence or work permit or expelled merely on the ground of failure to fulfil an obligation arising out of a work contract unless fulfilment of that obligation constitutes a condition for such authorization or permit.

#### Article 21

It shall be unlawful for anyone, other than a public official duly authorized by law, to confiscate, destroy or attempt to destroy identity documents, documents authorizing entry to or stay, residence or establishment in the national territory or work permits. No authorized confiscation of such documents shall take place without delivery of a detailed receipt. In no case shall it be permitted to destroy the passport or equivalent document of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Article 22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not be subject to measures of collective expulsion. Each case of expulsion shall be examined and decided individually.

2.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ay be expelled from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law.

3. The decis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m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Upon their request where not otherwise mandatory, the decis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m in writing and,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on account of national security,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likewise stated. The persons concerned shall be informed of these rights before or at the latest at the time the decision is rendered.

4. Except where a final decision is pronounced by a judicial authority, the person concerned shall have the right to submit the reason he or she should not be expelled and to have his or her case review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unless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require otherwise. Pending such review, the person concerned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a stay of the decision of expulsion.

5. If a decision of expulsion that has already been executed is subsequently annulled, the person concerned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according to



law and the earlier decision shall not be used to prevent him or her from re-entering the State concerned.

6. In case of expulsion, the person concerned shall have a reasonable opportunity before or after departure to settle any claims for wages and other entitlements due to him or her and any pending liabilities.

7. Without prejudice to the execution of a decision of expulsion,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who is subject to such a decision may seek entry into a State other than his or her State of origin.

8. In case of expulsion of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the costs of expulsion shall not be borne by him or her. The person concerned may be required to pay his or her own travel costs.

9. Expulsion from the State of employment shall not in itself prejudice any rights of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ac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at State, including the right to receive wages and other entitlements due to him or her.

#### Article 23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recourse to the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the consular or diplomatic authorities of their State of origin or of a State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at State whenever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e impaired. In particular, in case of expulsion, the person concerned shall be informed of this right without delay and the authorities of the expelling State shall facilitate the exercise of such right.

#### Article 24

Every migrant worker and every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hall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 Article 25

1. Migrant workers shall enjoy treatm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applies to nationals of the State of employment in respect of remuneration and:

(a) Other conditions of work, that is to say, overtime, hours of work, weekly rest, holidays with pay, safety, health,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any other conditions of work which, according to national law and practice, are covered by this term;

(b) Other terms of employment, that is to say, minimum age of employment, restriction on home work and any other matters which, according to national law and practice, are considered a term of employment.

2. It shall not be lawful to derogate in private contracts of employment from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reat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migrant

workers are not deprived of any rights derived from this principle by reason of any irregularity in their stay or employment. In particular, employers shall not be relieved of any legal or contractual obligations, nor shall their obligations be limited in any manner by reason of any such irregularity.

#### Article 26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 To take part in meetings and activities of trade unions and of any other associa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law,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ir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other interests,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b) To join freely any trade union and any such association as aforesaid,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c) To seek the aid and assistance of any trade union and of any such association as aforesaid.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other than those that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Article 27

1. With respect to social security,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enjoy in the State of employment the same treatment granted to nationals in so far as they fulfil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at State and the applicab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ea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of origin and the State of employment can at any time establish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determine the modalities of application of this norm.

2. Where the applicable legislation does not allow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 benefit, the States concerned sha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reimbursing interested persons the amount of contributions made by them with respect to that benefit on the basis of the treatment granted to nationals who are in similar circumstances.

#### Article 28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any medical care that is urgently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of their life or the avoidance of irreparable harm to their health on the basis of equality of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Such emergency medical care shall not be refused them by reason of any irregularity with regard to stay or employment.



Article 29

Each child of a migrant worker shall have the right to a name, to registration of birth and to a nationality.

Article 30

Each child of a migrant worker shall have the basic right of access to education on the basis of equality of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Access to public pre-school educational institutions or schools shall not be refused or limited by reason of the irregular situation with respect to stay or employment of either parent or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of the child's stay in the State of employment.

Article 31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respect for the cultural identity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shall not prevent them from maintaining their cultural links with their State of origin.

2. States Parties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and encourage efforts in this respect.

Article 32

Upon the termination of their stay in the State of employment,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ir earnings and savings an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States concerned, their personal effects and belongings.

Article 33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informed by the State of origin, the State of employment or the State of transit as the case may be concerning:

(a) Their rights arising out of the present Convention;

(b) The conditions of their admissio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law and practice of the State concerned and such other matters as will enable them to comply with administrative or other formalities in that State.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measures they deem appropriate to disseminate the said information or to ensure that it is provided by employers, trade unions or other appropriate bodies or institutions. As appropriate, they shall co-operate with other States concerned.

3. Such adequate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upon request to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ree of charge, and, as far as possible, in a language they are able to understand.

Article 34

Nothing in the present part of the Convention shall have the effect of relieving migrant workers and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from either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ny State of transit and the State of employment or the obligation to respect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inhabitants of such States.

Article 35

Nothing in the present part of the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mplying the regularization of th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or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no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or any right to such regularization of their situation, nor shall it prejudice the measures intended to ensure sound and equitable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s provided in part VI of the present Convention.

PART IV

Other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

Article 36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 in the State of employment shall enjoy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part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those set forth in part III.

Article 37

Before their departure, or at the latest at the time of their admission to the State of employment,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fully informed by the State of origin or the State of employment, as appropriate, of all conditions applicable to their admission and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ir stay and the remunerated activities in which they may engage as well as of the requirements they must satisfy in the State of employment and the authority to which they must address themselves for any modification of those conditions.

Article 38

1. States of employment shall make every effort to authorize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be temporarily absent without effect upon their authorization to stay or to work, as the case may be. In doing so, States of employmen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and obligation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particular in their States of origin.

2.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fully informed of the terms on which such temporary absences are authorized.

Article 39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employment and freedom to choose their residence there.

2. The right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those that are provided by law,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40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form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in the State of employ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ir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other interests.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that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Article 41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of their State of origin and to vote and to be elected at elections of that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2. The States concerned shall, as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legislation,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 Article 42

1.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or institutions through which account may be taken, both in States of origin and in States of employment, of special needs, aspirations and obligation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shall envisage, as appropriate, the possibility for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have their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in those institutions.

2. States of employment shall facilitat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the consultation or participation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decisions concerning the life and administration of local communities.

3. Migrant workers may enjoy political rights in the State of employment if that State, in the exercise of its sovereignty, grants them such rights.

#### Article 43

1. Migrant workers shall enjoy equality of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e State of employment in relation to:

(a) Acces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ervices subject to the admission requirements and other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s and services concerned;

(b) Access to vocational guidance and placement services;

(c) Access to vocational training and retraining facilities and institutions;

(d) Access to housing, including social housing schemes, and protection against exploitation in respect of rents;

(e) Access to social and health service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in the respective schemes are met;

(f) Access to co-operatives and self-managed enterprises, which shall not imply a change of their migration status and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bodies concerned;

(g)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2.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conditions to ensure effective equality of treatment to enable migrant workers to enjoy the right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whenever the terms of their stay, as authorized by the State of employment, meet the appropriate requirements.

3. States of employment shall not prevent an employer of migrant workers from establishing housing or social or cultural facilities for them. Subject to article 70 of the present Convention, a State of employment may make the establishment of such facilitie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generally applied in that State concerning their installation.

#### Article 44

1. States Parties, recognizing that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unity of the families of migrant worker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hat they deem appropriate and that fall within their competence to facilitate the reunification of migrant workers with their spouses or persons who have with the migrant worker a relationship that, according to applicable law, produces effects equivalent to marriage, as well as with their minor dependent unmarried children.

3. States of employment, on humanitarian grounds, shall favourably consider granting equal treatment, as set forth in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to other family members of migrant workers.

#### Article 45

1. Members of the families of migrant workers shall, in the State of employment, enjoy equality of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State in relation to:

(a) Acces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ervices, subject to the admission requirements and other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s and services concerned;



(b) Access to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services, provided that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are met;

(c) Access to social and health services, provided that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in the respective schemes are met;

(d)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2. States of employment shall pursue a policy, where appropriate in collaboration with the States of origin, aimed at facilitating the integration of children of migrant workers in the local school system, particularly in respect of teaching them the local language.

3. States of employment shall endeavour to facilitate for th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the teaching of their mother tongue and culture and, in this regard, States of origin shall collaborate whenever appropriate.

4. States of employment may provide special schemes of education in the mother tongue of children of migrant workers, if necessary in collaboration with the States of origin.

#### Article 46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subject to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States concerned, as well as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he obligations of the States concerned arising out of their participation in customs unions, enjoy exemption from import and export duties and taxes in respect of their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as well as the equipment necessary to engage in the remunerated activity for which they were admitted to the State of employment:

(a) Upon departure from the State of origin or State of habitual residence;

(b) Upon initial admission to the State of employment;

(c) Upon final departure from the State of employment;

(d) Upon final return to the State of origin or State of habitual residence.

#### Article 47

1. Migran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ir earnings and savings, in particular those funds necessary for the support of their families, from the State of employment to their State of origin or any other State. Such transfers shall be made in conformity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State concerned and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agreements.

2. States concerned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such transfers.

#### Article 48

1. Without prejudice to applicable double taxation agreements,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in the matter of earnings in the State of employment:

(a) Not be liable to taxes, duties or charges of any description higher or more

onerous than those imposed on nationals in similar circumstances;

(b) Be entitled to deductions or exemptions from taxes of any description and to any tax allowances applicable to nationals in similar circumstances, including tax allowances for dependent members of their families.

2.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avoid double taxation of the earnings and saving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Article 49

1. Where separate authorizations to reside and to engage in employment are required by national legislation, the States of employment shall issue to migrant workers authorization of residence for at least the same period of time as their authorization to engage in remunerated activity.

2. Migrant workers who in the State of employment are allowed freely to choose their remunerated activity shall neither be regarded as in an irregular situation nor shall they lose their authorization of residence by the mere fact of the termination of their remunerated activity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ir work permits or similar authorizations.

3. In order to allow migrant work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ufficient time to find alternative remunerated activities, the authorization of residence shall not be withdrawn at least for a period corresponding to that during which they may be entitled to unemployment benefits.

#### Article 50

1. In the case of death of a migrant worker or dissolution of marriage, the State of employment shall favourably consider granting family members of that migrant worker residing in that State on the basis of family reunion an authorization to stay; the State of employmen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length of time they have already resided in that State.

2. Members of the family to whom such authorization is not granted shall be allowed before departur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n order to enable them to settle their affairs in the State of employment.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e present article may not be interpreted as adversely affecting any right to stay and work otherwise granted to such family members by the legislation of the State of employment or by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eaties applicable to that State.

#### Article 51

Migrant workers who in the State of employment are not permitted freely to choose their remunerated activity shall neither be regarded as in an irregular situation nor shall they lose their authorization of residence by the mere fact of the termination of their remunerated activity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ir work permit, except where



the authorization of residence is expressly dependent upon the specific remunerated activity for which they were admitted. Such migran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alternative employment, participation in public work schemes and retraining during the remaining period of their authorization to work, subject to such conditions and limitations as are specified in the authorization to work.

#### Article 52

1. Migrant workers in the State of employment shall have the right freely to choose their remunerated activity, subject to the following restrictions or conditions.

2. For any migrant worker a State of employment may:

(a) Restrict access to limited categories of employment, functions, services or activities where this is necessary in the interests of this State and provided for by national legislation;

(b) Restrict free choice of remunerated activity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concerning recognition of occupational qualifications acquired outside its territory. However,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endeavour to provide for recognition of such qualifications.

3. For migrant workers whose permission to work is limited in time, a State of employment may also:

(a) Make the right freely to choose their remunerated activitie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migrant worker has resided lawfully in its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remunerated activity for a period of time prescribed in its national legislation that should not exceed two years;

(b) Limit access by a migrant worker to remunerated activities in pursuance of a policy of granting priority to its nationals or to persons who are assimilated to them for these purposes by virtue of legislation or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Any such limitation shall cease to apply to a migrant worker who has resided lawfully in its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remunerated activity for a period of time prescribed in its national legislation that should not exceed five years.

4. States of employment shall prescrib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migrant worker who has been admitted to take up employment may be authorized to engage in work on his or her own account.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period during which the worker has already been lawfully in the State of employment.

#### Article 53

1. Members of a migrant worker's family who have themselves an authorization of residence or admission that is without limit of time or is automatically renewable shall be permitted freely to choose their remunerated activit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are applicable to the said migrant work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 of the present Convention.

2. With respect to members of a migrant worker's family who are not

permitted freely to choose their remunerated activity,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favourably granting them priority in obtaining permission to engage in a remunerated activity over other workers who seek admission to the State of employment, subject to applicab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 Article 54

1. Without prejudice to the terms of their authorization of residence or their permission to work and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s 25 and 27 of the present Convention, migrant workers shall enjoy equality of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e State of employment in respect of:

(a)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b) Unemployment benefits;

(c) Access to public work schemes intended to combat unemployment;

(d) Access to alternative employment in the event of loss of work or termination of other remunerated activity, subject to article 52 of the present Convention.

2. If a migrant worker claims that the terms of his or her work contract have been violated by his or her employer, he or she shall have the right to address his or her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of employment, on terms provided for in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55

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engage in a remunerated activity, subject to the conditions attached to such permission, shall be entitled to equality of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e State of employment in the exercise of that remunerated activity.

#### Article 56

1.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referred to in the present part of the Convention may not be expelled from a State of employment, except for reasons defined in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at State, and subject to the safeguards established in part III.

2. Expulsion shall not be resorted to for the purpose of depriving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of the rights arising out of the authorization of residence and the work permit.

3. In considering whether to expel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account should be taken of humanitarian considerations and of the length of time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already resided in the State of employment.

### PART V

Provisions applicable to particular categorie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Article 57

The particular categorie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pecified in the present part of the Convention who are 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 shall enjoy the rights set forth in part III and, except as modified below, the rights set forth in part IV.

#### Article 58

1. Frontier workers,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2 (a),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entitled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t IV that can be applied to them by reason of their presence and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employment, taking into account that they do not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in that State.

2. States of employment shall consider favourably granting frontier workers the right freely to choose their remunerated activity afte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granting of that right shall not affect their status as frontier workers.

#### Article 59

1. Seasonal workers,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2 (b),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entitled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t IV that can be applied to them by reason of their presence and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employment and that are compatible with their status in that State as seasonal worker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y are present in that State for only part of the year.

2. The State of employment shall, subject to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consider granting seasonal workers who have been employed in its territory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the possibility of taking up other remunerated activities and giving them priority over other workers who seek admission to that State, subject to applicab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 Article 60

Itinerant workers,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2 (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entitled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t IV that can be granted to them by reason of their presence and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employment and that are compatible with their status as itinerant workers in that State.

#### Article 61

1. Project-tied workers,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2 (f),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be entitled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t IV except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paragraphs 1 (b) and (c), article 43, paragraph 1 (d), as it pertains to social housing schemes, article 45, paragraph 1 (b), and articles 52 to 55.

2. If a project-tied worker claims that the terms of his or her work contract have been violated by his or her employer, he or she shall have the right to address his

or her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at employer, on terms provided for in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present Convention.

3. Subject to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in force for them,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endeavour to enable project-tied workers to remain adequately protected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s of their States of origin or habitual residence during their engagement in the project.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with the aim of avoiding any denial of rights or duplication of payments in this respect.

4.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relevant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permit payment of the earnings of project-tied workers in their State of origin or habitual residence.

#### Article 62

1. Specified-employment workers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2 (g),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entitled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t IV, except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paragraphs 1 (b) and (c), article 43, paragraph 1 (d), as it pertains to social housing schemes, article 52, and article 54, paragraph 1 (d).

2. Members of the families of specified-employment workers shall be entitled to the rights relating to family members of migrant workers provided for in part IV of the present Convention, except the provisions of article 53.

#### Article 63

1. Self-employed workers,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2 (h),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entitled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t IV with the exception of those rights which are exclusively applicable to workers having a contract of employment.

2.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52 and 79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ination of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self-employed workers shall not in itself imply the withdrawal of the authorization for them or for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stay or to engage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the State of employment except where the authorization of residence is expressly dependent upon the specific remunerated activity for which they were admitted.

### PART VI

Promotion of sound, equitable, humane and lawful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migration of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Article 64

1.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79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as appropriate consult and co-operate with a view to promoting sound, equitable and humane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migration of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 In this respect, due regard shall be paid not only to labour needs and resources, but also to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other need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volved, as well as to the consequences of such migration for the communities concerned.

#### Article 65

1. States Parties shall maintain appropriate services to deal with ques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migration of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ir functions shall include, inter alia:

(a)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garding such migration;

(b) An exchange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States Parties involved in such migration;

(c)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information, particularly to employers, workers and their organizations on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migration and employment, on agreements concluded with other States concerning migration and on other relevant matters;

(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appropriate assistance to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regarding requisite authorizations and formalities and arrangements for departure, travel, arrival, stay, remunerated activities, exit and return, as well as on conditions of work and life in the State of employment and on customs, currency, tax 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2. States Parties shall facilitate as appropriate the provision of adequate consular and other services that are necessary to meet the social, cultural and other need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Article 66

1. Subject to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the right to undertake operations with a view to the recruitment of workers for employment in another State shall be restricted to:

(a) Public services or bodies of the State in which such operations take place;

(b) Public services or bodies of the State of employment on the basis of agreement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c) A body established by virtue of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2. Subject to any authorization, approval and supervision by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s may be established pursuant to the legislation and practice of those States, agencies, prospective employers or persons acting on their behalf may also be permitted to undertake the said operations.

#### Article 67

1.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co-operate as appropriate in the adoption of measures regarding the orderly return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the State of origin when they decide to return or their authorization of residence or employment expires or when they are in the State of employment in an irregular situation.

2. Concerning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a regular situation,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co-operate as appropriate, on terms agreed upon by those States, with a view to promoting adequate economic conditions for their resettlement and to facilitating their durable social and cultural reintegration in the State of origin.

#### Article 68

1. States Parties, including States of transit, shall collaborate with a view to preventing and eliminating illegal or clandestine movements and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The measures to be taken to this end within the jurisdiction of each State concerned shall include:

(a)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the dissemination of misleading information relating to emigration and immigration;

(b) Measures to detect and eradicate illegal or clandestine movemen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o impose effective sanctions on persons, groups or entities which organize, operate or assist in organizing or operating such movements;

(c) Measures to impose effective sanctions on persons, groups or entities which use violence, threats or intimid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or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an irregular situation.

2. States of employment shall take all adequ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liminate employment in their territory of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including, whenever appropriate, sanctions on employers of such workers.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vis-a-vis their employer arising from employment shall not be impaired by these measures.

#### Article 69

1. States Parties shall, when there are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ithin their territory in an irregular situation,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such a situation does not persist.

2. Whenever States Parties concerne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regularizing the situation of such person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on and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appropriate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circumstances of their entry, the duration of their stay in the States of employment and other relevant considerations, in particular those relating to their family situation.



#### Article 70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not less favourable than those applied to nationals to ensure tha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a regular situation are in keeping with the standards of fitness, safety, health and principles of human dignity.

#### Article 71

1. States Parties shall facilitate, whenever necessary, the repatriation to the State of origin of the bodies of deceased migrant workers or members of their families.

2. As regards compensation matters relating to the death of a migrant worker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States Parties shall, as appropriate, provide assistance to the persons concerned with a view to the prompt settlement of such matters. Settlement of these matters shall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applicable 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any relevant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 PART VII

####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 Article 72

1. (a)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b) The Committee shall consist,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ten an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forty-first State Party, of fourte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impartiality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2. (a)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by the States Parties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the States Parties, due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including both States of origin and States of employment, an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b) Members shall be elected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3.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subsequent elections every second year.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all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the States Parties that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not later than one month

before the date of the corresponding election, together with the curricula vitae of the persons thus nominated.

4. Elections of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a meeting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t that meeting,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nominees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5. (a)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serve for a term of four years. However, the terms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in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b) The election of the four additional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3 and 4 of the present articl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forty-first State Party. The term of two of the additional members elected on this occas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the names of thes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c)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6.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declares that for any other cause he or she can no longer perform the dutie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that nominated the expert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for the remaining part of the term. The new appointment i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7.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8.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General Assembly may decide.

9.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73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a report on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Withi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b) Thereafter every five years and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2. Reports prepared under the present article shall also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flows in which the State Party concerned is involved.

3. The Committee shall decide any further guidelines applicable to the content of the reports.

4.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 Article 74

1.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reports submitted by each State Party and shall transmit such comment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his State Party may submit to the Committee observations on any comment made by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article. The Committee may request supplementary information from States Parties when considering these report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 due time before the opening of each regular session of the Committee, transmit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opies of the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information relevant to the consideration of these reports, in order to enable the Office to assist the Committee with the expertise the Office may provide regarding those matters dealt with by the present Convention that fall within the sphere of compet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in its deliberations such comments and materials as the Office may provide.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y also,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transmit to other specialized agencies as well as t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copies of such parts of these reports as may fall within their competence.

4.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concerned bodies to submit, fo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written information on such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5.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be invited by the Committee to appoint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a consultative capacity, in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6. The Committee may invite representatives of other specialized agencies and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present and to be heard in its meetings whenever matters falling within their field of competence are considered.

7. The Committee shall present an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containing its own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based, in particular, on the examination of the reports and any observations presented by States Parties.

8.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the annual reports of the Committee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United Natio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 Article 75

1. The Committee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2.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3.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nnually.

4.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 Article 76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to the effect that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may be received and considered only if submitted by a State Party that has made a declaration recognizing in regard to itsel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a) I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it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at State Party. The State Party may also inform the Committee of the matter.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communica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afford the State that sent the communication an explanation, or any other statement in writing clarifying the matter which should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and pertinent, reference to domestic procedures and remedies taken, pending or available in the matter;

(b) If the matter is not adjusted to the satisfaction of both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by the receiving State of the initial communication, either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by notice given to the Committee and to the other State;

(c) The Committee shall deal with a matter referred to it only after it has ascertained that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invoked and exhausted in the matter,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of the present paragraph, the Committee shall make available its good offices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 friendly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the respect for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e)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e present article;

(f) In any matter referred to i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the present paragraph, the Committee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to supply any relevant information;

(g)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the present paragraph,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when the matter is being considered by the Committee and to make submissions orally and/or in writing;

(h) The Committee shall,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notice under subparagraph (b) of the present paragraph, submit a report, as follows:

(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d) of the present paragraph is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i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d) is not reached, the Committee shall, in its report, set forth the relevant facts concerning the issue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written submissions and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 The Committee may also communicate only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y views that it may consider relevant to the issue between them. In every matter, the repor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2.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ten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have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e present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any State Party shall be received under the present article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new declaration.

#### Article 77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e present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who claim that their individual rights as established by the present Convention have been

violated by that State Party.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that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2.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inadmissible any communication under the present article which is anonymous or which it considers to be an abuse of the right of submission of such communications or to be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3. The Committee shall not consider any communications from an individual under the present article unless it has ascertained that:

(a) The same matter has not been, and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b) The individual has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or is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to that individual.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the Committee shall bring any communications submitted to it under this article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that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and is alleged to be violating any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thin six months, the receiving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taken by that State.

5.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e present article in the light of all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or on behalf of the individual an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6.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e present article.

7. The Committee shall forward its view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to the individual.

8.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ten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e present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or on behalf of an individual shall be received under the present article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has made a new declaration.

#### Article 78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applied without prejudice to any procedures for settling disputes or complaints in the field covered by the present Convention laid down in the constituent instruments of, or in conven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shall not prevent the States Parties from having recourse to any procedures for settling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m.

#### PART VII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79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each State Party to establish the criteria governing admission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oncerning other matters related to their legal situation and treatment as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tates Parties shall be subject to the limitation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80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81

1.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more favourable rights or freedoms granted to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by virtue of:  
(a) The law or practice of a State Party; or (b)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y in force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2.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perform any act that would impair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a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82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nvention may not be renounced. It shall not be permissible to exert any form of pressure upon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ith a view to their relinquishing or foregoing any of the said rights. It shall not be possible to derogate by contract from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se principles are respected.

##### Article 83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undertakes:

(a) To ensure that any person whose rights or freedoms as herein recognized are violated shall have an effective remedy, notwithstanding that

the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by person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b) To ensure that any persons seeking such a remedy shall have his or her claim reviewed and decided by competent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uthorities, or by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provided for by the legal system of the State, and to develop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 remedy;

(c) To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force such remedies when granted.

##### Article 84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adopt th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 PART IX Final provisions

##### Article 8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86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It is subject to ratification.

2.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3.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87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present Convention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 Article 88

A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present Convention may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any Part of it, or,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3, exclude any particular category of migrant workers from its application.



#### Article 89

1. Any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not earlier than five years after the Convention has entered into force for the State concerned, by means of a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Such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Such a denunci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State Party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in regard to any act or omission which occurs prior to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nor shall denunciation prejudice in any way the continued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already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prior to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4. Following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of a State Party becomes effective, the Committee shall not commence consideration of any new matter regarding that State.

#### Article 90

1. After five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 request for the revision of the Convention may be made at any time by any State Party by means of a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that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 that they have accepted.

#### Article 91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the text of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2.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3.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is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inform all States thereof.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 Article 92

1.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hat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2. Each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The other States Parties shall not be bound by that paragraph with respect to any State Party that has made such a declaration.

3. Any State Party that has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at declar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93

1.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o all Stat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全文)

-이 글은 공식적인 한글판 조약은 아니며 번역본입니다-

## 목 차

### 전문

#### 제1부 적용 범위와 정의

#### 제2부 차별없는 권리 보장

#### 제3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인권

#### 제4부 정규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인정되는 추가적인 권리

#### 제5부 특별 형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규정

#### 제6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 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정한 그리고 인도적인 동시에 합법적인 조건의 정비

#### 제7부 조약의 적용

#### 제8부 최종 규정

(注)이 조약을 번역할 때 국제 인권 규약 같이 법전으로 되어 정식 번역이 된 것은 그에 따랐습니다.

번역상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원문과 대조하여 읽으시길 바랍니다.

## 전문

이 조약의 체결국은

인권 관련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합의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 어린이의 권리조약에 담긴 기본원칙을 고려해서,

국제노동기구의 테두리 속에서 형성된 관련 합의문서 특히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조약(97호 조약), 학대 상황에 있는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평등보호에 관한 조약(143호 조약),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권고(86호 권고), 이주 노동자에 관한 권고(151호 권고),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29호 조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105호 조약)이 명시한 원칙과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약에 포함되는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기타 잔악한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조약, 범죄방지 및 범인 취급에 관한 제4회 국제연합회의선언,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강령, 노예제폐지에 관한 제조약을 상기해서,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이 표방하는 목적의 하나가 자국 이외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노동자의 권리보호인 점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련하는 사항에 관한 이 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상기해서,

국제연합 조직 속의 제기관, 특히 인권위원회, 회사개발위원회 및 UN식량농업기관(FAO), UN교육과학문화기관(UNESC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관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실시해 온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몇몇 나라에서 지역적 합의 내지 이국간 합의를 기초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해 달성된 성과와 이 영역에서의 이국간 및 다국간 합의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현상의 중대성과 확산을 이해하고,

이주노동자의 집단이 관계국과 그 국민에 미치는 충격을 인식하고, 관계국들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국가간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의 확립을 회고하고,

여러 원인, 특히 출신국에 거주하지 않은 것 및 취업국에 체재하는 데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에 있음을 고려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적절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주는 가족의 확산을 수반하므로 이주노동자 본인에게도 또한 그 가족에게도 종종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됨을 고려하고,

이주에 포함되는 인도적인 제문제는 비정규 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것에 유의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밀수나 운반을 방해하고 廢絶할 것을 장려하는 적절한 행동이 취해져야 함을 확신하고,

정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비정규인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종종 타노동자보다도 불리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부 고용자는



이익을 위해 비정규취로를 찾는 점을 고려해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승인된다면 비정규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취로에 기대는 것은 멈춰질 것이며 나아가 정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얼마간의 권리를 보충적으로 인정한다면 모든 이주노동자와 고용자가 그 나라의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촉진할 것임을 배려해서,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포괄적인 조건에 의거해 기본이 되는 규범을 재확인하고 확립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의 국제적인 보호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협정했다.

## 제1부 적용범위와 정의

### 제1조

1. 이 조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의견과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된다.
2. 이 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이주의 준비, 출국, 이동, 취업국에 체재해서 유급 활동을 하는 동안 및 출신국 또는 거주국으로의 귀환을 포함하는 이주의 모든 기간에 적용된다.

제2조 이 조약의 적용상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a) “월경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그 주소를 인접국에 보유하고 통상 적어도 매주 한 번은 귀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 (b) “계절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일이 계절 조건에 의한 성질을 갖고, 일 년중 한정된 시기만 취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c) “선원(여기서 선장은 포함안됨)”이란 이주노동자로 고용되어 외국국적의 선박에 승선해서 취로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어업노동자도 포함된다.
- (d) “해상시설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국적을 갖지 아니한 나라의 관할에 속하는 해상시설에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 (e) “순회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어느 한 나라에 주소를 갖고 일의 성질상 단기간 다른 나라들에 나갈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f) “특정사업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취업국에 의해 고용자가 그 나라에서 행하는 특정의 사업에 한해 취로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의 입국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 (g) “특별취업자”란 이주노동자로 (i)고용자에 의해 한정된 일정 기간 취업국에 파견되어 의뢰받은 특정의 직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ii)한정된 일정 기간 전문직업, 통상,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iii)취업국의 고용자의 요구에 의해 한정된 일정 기간 임시적 또는 단기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서 그 체재기간이 만료하던가 혹은 이들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출국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h) “자영취업자”란 이주노동자로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 통상 단독 혹은 가족과 함께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취업국의 법률 적용 내지 이국간 또는 다국간 조약에 의해 자영취업이라고 인정받은 기타의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 이 조약은 이하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국제기간에 고용된 또는 국제기간에서 파견된 사람 혹은 관할구역외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한 나라에 고용되었거나 그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입국과 재류자격에 대해서 일반 국제법 내지 특정의 국제적 결정, 혹은 협정이 규제하는 사람
- (b) 어느 한 나라 내지 그 국외에서의 대표로 고용되거나 파견되어 개발계획과 기타 협력 계획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입국과 재류자격에 대해서 취업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제받고 있고 그협약에 의해 이주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 (c) 투자가로서 출신국이외의 나라에 주거를 가진 사람
- (d) 난민 및 무국적자. 단 관련하는 조약, 체약국의 관계국내법 또는 유효한 국제합의문에 의해 적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e) 학생 및 연수생
- (f) 선원 및 해상시설 노동자로 취업국에 주거를 정하는 것 및 국내에서 유급 활동을 수행할 것을 인정받지 아니한 사람

제4조 이 조약의 적용상 “가족”은 이주노동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법의 적용상 혼인과 다름없는 효력이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 부양하는 자녀 및 기타 피부양자로 관련하는 법 또는 관계국의 이국간 내지 다국간 협정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이 조약의 적용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 (a) 취업국의 법률 및 그 나라가 가맹하고 있는 국제합의에 의해 입국, 체재, 유급활동으로의 종사가 인정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b) (a)항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는 혹은 비정규인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이 조약의 적용상

- (a) “출신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국적을 가진 나라를 말한다.
- (b) “취업국”은 이주노동자가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예전에 종사했던 나라를 말한다.
- (c) “통과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으로 이동, 혹은 취업국에서 출신국 또는 통상의 거주국으로 이동을 할 때 통과하는 나라를 말한다.

## 제2부 차별없는 권리 보장

제7조 이 조약의 체약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합의문에 따라 영역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의견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



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진다.

### 제3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인권

제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도 포함해서 어느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다. 이 권리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단 그 제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나라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는데 필요하고 동시에 이 조약의 제3부에서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양립하는 것일 때는 제외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에 입국해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제10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고문 또는 잔학한 비인도적인 혹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 혹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노예 상태에 두는 것은 금지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강제노동에 복종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3. 본조 2항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을 수반하는 구금형을 과할 수 있는 나라에서 권한이 있는 재판소에 의해 형벌이 언도되어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4. 본조의 적용상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작업 또는 의무(役務)로 본조 3항에서 언급되지 않고 동시에 재판소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해 억류되는 것 또는 그 억류를 조건부로 면제되는 것에 통상 요구되는 것

(b) 사회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의 경우에 요구되는 의무

(c) 시민으로서의 통상의 의무로 여겨지는 작업 또는 의무로 그 나라의 시민에게 부과된 것

제1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신념을 수락 또는 保持할 자유 및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해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교도에 의해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신념을 수락 또는 保持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를 받지 않는다.

3.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제한에 의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을 과할 수 있다.

4. 이 조약의 체결국은 어느 한쪽이나 양쪽 다 이주노동자인 부모 및 경우에 따라 법정 보호자가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자식의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의 존중을 약속한다.

제13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간섭받지 않는 의견의 자유를 가진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手書 혹은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본인이 선택한 다른 방법에 의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고를 요구하고 받아들이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3. 본조 2항의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 및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과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법률이 정하고 동시에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한한다.

(a)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나라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

(c) 전쟁선전의 금지

(d) 차별, 적의 혹은 폭력 선동이 되는 국민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선전 금지

제14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가족, 주거, 문서 혹은 기타 통신에 대해 자의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명예 및 신용을 불법적으로 공격받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해서 소유하는 재산을 자의적으로 뺏을 수 없다. 취업국의 국내법에 의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수용당할 때는 그 사람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사적집단 혹은 조직에 의한 관계없이 폭력, 상해, 협박 및 위협에 대해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범집행에 있어서 관헌에 의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동일인성 확인 조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 집단적으로도 자의적으로 체포 또는 구류할 수 없고,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자유를 뺏을 수 없다.

5.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체포할 때 가능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 이유를 밝히고, 그 사람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밝힌다.

6. 형사상의 죄를 문책받고 체포 또는 구류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재판관 또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관헌의 면전에서 신속히 연행되어 가는 것으로 하고 타당한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구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는 안되며, 석방에 있어서 재판 기타 사법상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에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가 보증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7.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포되어 재판계쟁중에 형무소 내지 구치시설에 수용되거나 기타 어떤 양태이든 신병이 구속되어 있을 때,

(a) 그 사람의 요구가 있으면 체포, 구류 사실과 그 이유를 출신국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나라의 영사관 또는 외교사절단에 지체없이 전한다.

(b) 그 사람은 외교사절단과 통신할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으로부터 외교사절단 앞으로



보내온 통신은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그 사람은 외교사절단으로부터의 통신을 지체없이 받을 권리를 가진다.

(c) 그 사람은 외교사절단과 통신하고 그 대표자와 면회하고, 변호인에 관한 협의를 행할 권리에서 조약 및 국가간 협정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지체없이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체포 또는 구류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재판소가 그 구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지체없이 결정할 것 및 그 구류가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재판소에서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이 절차에 참가하고 거기서 쓰이는 언어를 이해할 것 또는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의 원조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필요한 때는 비용은 부상으로 한다.

9.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위법으로 체포되거나 구류되었을 때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인도적으로 동시에 인간 고유의 존엄과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해서 취급된다.

2. 기소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는 분리되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한 개별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소년의 피고인은 성년과는 분리하고 가능한 신속히 재판에 부친다.

3. 취업국 또는 통과국에서 이주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서 구금된 사람은 실행 가능한 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혹은 재판계정중의 사람과는 분리해서 취급한다.

4. 재판소가 과한 형벌로서 구금이 집행중일 때 처우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교정 및 사회복귀에 두어야 한다. 소년의 범죄자는 성인과는 분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한 취급을 받는다.

5.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구류 혹은 구금 기간중 가족의 면회에 관해서 그 나라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6. 이주노동자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기간중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그 노동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취업국 또는 통과국에서 효력을 가진 법률에 의해 구류 또는 구금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같은 지위에 있는 당해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8.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주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속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구속의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재판소 앞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하다. 그 사람은 형사상의 죄의 결정 혹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시비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에서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의 동시에 공평한 재판소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상의 죄를 문책받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기초해서 유죄가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형사상의 죄의 결정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그 죄의 성질 및 이유를 고지받을 것
- (b) 방어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 및 편익이 주어지고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하는

것

(c) 부당하게 지연되는 일없이 재판을 받는 것

(d) 스스로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직접 또는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서 방어 할 것.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고지받을 것. 사법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지불수단을 갖지 않을 때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변호인을 부치는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이에 대해서 심문하게 하는 것 및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의 출석 및 이에 대한 심문을 요구하는 것

(f) 재판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인의 원조를 받는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공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

4. 소년의 경우에는 절차는 그 연령 및 그 경정의 축진이 바람직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5. 유죄 판결을 받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기초해서 그 판결 및 형벌을 상급의 재판소에 의해 재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확정판결에 의해 유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후에 새로운 사실 혹은 새롭게 발견된 사실에 의해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입증된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에 복종한 사람은 법률에 의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적당한 시기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의 전부 혹은 일부가 그 사람의 책임에 귀한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나라의 법률 및 형사처사에 따라서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해 재차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19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실행을 할 때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작위 혹은 부작위를 이유로 해서 유죄로 되지 않고,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에 적용되었던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 범죄가 행해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벌을 과하는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형벌을 과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지위, 특히 在留와 취업의 권리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가 없으면 안된다.

제20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구금되지 않는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노동계약에서 생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재류 내지 취업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또한 국외퇴거로 처벌받지 않는다. 단, 당해의 의무 이행이 재류 또는 취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21조 법률에 의해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외의 사람이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일국의 영역으로의 입국, 체재, 거주, 정주를 인정하는 서류 혹은 노동허가증을 몰수, 파기 혹은 파기할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들 서류의 압수가 권한에 기초해서 행해질 때는 상세한 수령증이 교부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여권 혹은 그에



상용하는 서류를 파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제2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의 조치는 금지된다. 추방은 개별적으로 심리를 받아 결정되어야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권한있는 당국이 법률에 따라 행하는 결정에 의해서만 이 조약의 계약국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된다.

3. 추방의 결정은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요구할 때는 결정은 서면으로 전달되며 국가의 안전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결정의 이유도 진술되어야 한다. 이들 권한에 대해서는 결정 이전에 늦어도 결정을 할 때에 관계자에게 고지되는 것으로 한다.

4. 사법당국에 의한 최종 판결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는 자기에 대한 추방처분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자기의 주장을 심사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단, 국가의 안전에 관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別里로 취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 사람은 심사기간중, 추방 결정의 집행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 집행이 끝난 추방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을 때 그 사람은 법률에 기초해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전의 결정은 그 사람이 당해 나라에 재입국할 것을 방해하는 이유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6. 추방의 경우에는 관계자에게는 출국전 또는 후에 임금 기타 마땅히 그 사람에게 귀해야 할 것에 관한 주장 또는 미처리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

7. 추방 결정의 집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이 된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은 출신국 이외의 나라로 입국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추방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이주노동자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단, 관계자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허락된다.

9. 취업국으로부터의 추방은 임금청구권 내지 그 사람에게 마땅히 귀해야 할 다른 권리를 포함해서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당해 나라의 법률에 따라 획득한 어떠한 권리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제23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조약이 인정된 권리가 손상되었을 때는 출신국 내지 그 나라의 이익을 대표하는 나라의 영사관 또는 외교사절단의 보호와 원조를 의뢰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추방의 경우는 이 권리에 대해 관계자에게 지체없이 고지되고, 추방하는 나라의 당국은 이 권리의 실현에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한다.

제24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모든 장소에 있어서, 법률 앞에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이하의 점에서 취업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게 취급받지 않는다.

(a) 타 노동조건, 즉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휴,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에서 노동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

(b) 타 취로조건, 즉 취로의 최저연령, 재택근무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에서 취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

2. 사적인 고용계약에서 본조 1항에서 말하는 평등처우의 원칙을 일탈하는 경우는 위법이다.

3. 계약국은 이주노동자가 그 체제 또는 취업이 부정규인 것을 이유로 평등처우원칙으로부터 이끌어지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고용자가 부정규성을 이유로 해서 법률상 및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피하거나 한정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1. 계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이하의 권리를 인정한다.

(a) 노동조합 및 법률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기초해서 설립된 조직의 집회 및 활동에 참가할 권리

(b) 노동조합 기타 조직에 가입할 권리

(c) 노동조합 기타 조직의 원조 및 지원을 요구할 권리

2. 1항에서 정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사회에서 필요하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제한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제27조 1. 사회보장에 대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및 이국간 내지 다국간 조약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는 취업국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한다. 출신국과 취업국의 소관관청은 본항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협약을 행할 수 있다.

2. 국내법에 의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급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 나라는 같은 지위에 있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처우를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이 행한 각출상당액을 상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28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생명의 유지와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로 되는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급의료는 그 사람이 재류 또는 취업이 부정규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제29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 등록,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기초로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이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 입학할 것을 요구할 때 부모중 어느 한 사람이 재류 내지 취업이 부정규이거나 취업국에서의 그 자녀의 재류가 부정규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제31조 1. 계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출신국과의 문화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계약국은 그 노력을 조장하고 촉진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2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의 재류가 종료되었을 때 소득, 저축 및 국내법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가재 및 소지품을 이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하의 사항에 관해서 출신국, 취업국, 통과국중 관계하는 나라로부터 정보를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a) 이 조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b) 그 나라에 있어서 입국의 조건,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 법률과 관행 및 그 사람이 행정절차 기타 절차에 따를 것을 가능케 하기위한 기타의 사항

2. 체약국은 전항의 정보의 보급 또는 고용자, 노동조합 및 기타 적절한 단체나 조직에 의한 정보제공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국과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요구했을 때는 적절한 정보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 이 조약의 본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통과국과 취업국의 법과 규칙에 따를 의무 또는 그들 나라의 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35조 이 조약의 본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정규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정규인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이 조약의 제6부에서 정하는 건전하면서 공정한 국제적 이주환경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쳐서는 안된다.

#### 제4부 정규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적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인정되는 추가적인 권리

제36조 취업국에서 정규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적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조약의 제3부에서 정하는 제권리에 추가하여 본 제4부에서 정하는 제권리도 향유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을 떠나기 전에 또는 늦어도 취업국에 입국할 때에 입국하는데 적절한 모든 조건, 특히 체제, 그 사람이 종사하는 것이 인정된 유급 활동에 관한 조건, 취업국에서 충족시켜야 할 필요조건 및 이들 조건의 변경을 신고할 당국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출신국 또는 취업국으로부터 충분한 교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취업국은 사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재류와 취업의 자격에 영향 내지 일시출국이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때 취업국은 출신국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러한 일시출국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의 영역내에서 이동의 자유와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2. 본조 1항의 권리는 어떠한 제한에도 따르지 않는다. 단, 그 제한이 법률로 정하고,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 조약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모순되지 않은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취업국에서 노동조합 기타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본조 1항의 권리는 어떠한 제한에도 따르지 않는다. 단, 그 제한이 법률에서 정하고, 민주주의사회에서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그 나라의 공공의 사항에 참가하고 그 나라의 선거가 있을 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관계국은 법률에 따라 동시에 적절하게 이들 권리의 실행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제42조 1.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 제한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거된 대표자를 가질 수 있음을 바르게 예측해야 한다.

2. 취업국은 국내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생활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 협의하고 또 그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

3.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의 국가의 주권에 의한 결정으로서 권리를 부가받는 한, 이 나라에서의 정치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43조 1. 이주노동자는 이하의 것의 이용, 참가에 대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 받는 것으로 한다.

(a) 교육시설 및 교육사업. 이것은 당해시설 및 사업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사업

(c)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 및 제도

(d) 주택. 이것은 사회주택계획 및 부당하게 고액인 짐세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e) 사회, 보건사업. 이것은 당해사업의 참가자격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f) 협동조합사업 및 자주관리사업.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지위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해 단체가 정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g) 문화활동사업

2. 체약국은 취업국에 의해 인정된 재류자격이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때에 이주노동자가 본조 1항이 정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처우가 효과적으로 확보될 조건을 신장해야만 하는 것으로 한다.

3. 취업의 법적 상태에 관계없이 고용자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주택계획, 사회, 문화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취업국은 이 조약 7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설비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에 따른 것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1. 계약국은 가족이 사회의 자연 동시에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 및 나라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 가족의 동거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배우자, 법률의 적용상 혼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미성년으로 부양을 요하는 독신의 자녀와의 동거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3. 취업국은 그밖의 가족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본조 2항에서 정한 것과 동등한 조치를 취하도록 호의적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 1.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이하의 것의 이용, 참가에 대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 것으로 한다.

(a) 교육시설 및 교육사업. 이것은 당해 시설 및 사업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시설 및 제도. 이것은 참가자격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c) 사회, 보건사업. 이것은 당해 사업의 참가자격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d) 문화활동사업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고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고 특히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4. 취업국은 필요한 때에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해 모국어에 의한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관계국의 법률, 관련하는 국제적인 합의 및 관세동맹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가재와 소지품 및 취업국이 인정한 유급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류에 대해서 이하의 경우에 수출입의 세가 면제된다.

(a) 출신국 또는 통상의 거주국으로부터 출국을 할 때

(b) 취업국으로 1회째 입국을 할 때

(c) 취업국으로부터 최종적인 출국을 할 때

(d) 출신국 또는 통상의 거주국으로 귀국을 할 때

제47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수입 및 저축, 특히 가족 부양에 필요한 임금을 취업국에서 출신국 또는 기타 나라에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송금은 그 나라의 국내법의 절차 및 국제합의에 따라서 행한다.

2. 관계국은 송금을 간략하게 하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제4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의 수입에 관해 이중과세의 결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하와 같이 취급되는 것으로 한다.

(a)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나라의 국민보다도 고액이거나 부담이 보다 심한 과세를 할 수 없다.

(b)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세의 감면을 받는다. 또한 가족 부양을 위한 공제를 포함해서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공제를 받는다.

2. 계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수입 및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노력을 한다.

제49조 1. 국내법에 의해 재류와 취업에 개별의 허가를 요하는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재류기간을 최단이라도 유급활동의 기간과 같게해서 허가해야 한다.

2. 취업국에서 유급활동을 선택할 자유가 인정되는 이주노동자는 취업기간의 만료이전에 유급활동이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규한 법적지위에 있는 것 내지 재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본조 2항의 이주노동자에게 다른 유급활동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재류를 취급하는 당국은 적어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동안은 재류자격을 취소해서는 안된다.

제50조 1.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거나 혼인을 해소했을 때에 취업국은 그 이주노동자의 가족 중에서 가족의 동거의 재현을 기초로 재류하고 있던 사람의 재류허가에 대해 호의적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취업국은 그 사람이 이미 재류한 기간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2. 전항의 재류허가를 인정받지 못한 가족의 경우에는 출국 전에 처리해야 할 사항을 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시간적 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본조 1, 2항의 규정은 취업국의 국내법 또는 이국간 내지 다국간의 조약으로 이와 같은 가족에게 인정되는 재류 또는 취업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51조 이주노동자는 다음 항 이하에서 정하는 조건과 제한의 범위내에서 취업국에서의 유급활동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2. 취업국은 어떠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이하를 행할 수 있다.

(a) 국내법에서 정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수인 특정의 범위의 취업, 직능, 노무, 작업으로의 진출 제한

(b) 국외에서 취득된 직업상의 자격 승인에 관한 입법에 의한 유급활동의 선택의 자유 제한

3. 취업국은 취업 허가가 기한부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더 한층 이하를 행할 수 있다.

(a) 그 이주노동자가 이미 일정기간 유급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해 왔을 때에 한해서 유급활동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것. 단, 이 기간은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고 동시에 최장으로 2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b) 자국의 국민 또는 국내법 또는 이국간 혹은 다국간의 합의에 의해 동등하게 취급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유급활동으로의 진출을 제한할 것. 이 제한은 일정기간 유급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해 온 이주노동자에게 과해서는 안된다. 더우기 이 기간은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고 동시에 최장으로 5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취업국은 취로를 해 온 이주노동자가 자영으로 취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허가의 조건을 정한다. 이때 이주노동자의 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취로의 실적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제53조 1. 이주노동자의 가족으로 그 사람 자신이 무기한 또한 자동연장이 가능한 입국 또는 체재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그 사람은 유급활동에 관해서 이 조약의 52조에 의해 이주노동자에 과해지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인정된다.

2. 이주노동자의 가족으로 유급활동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체약국은 이국간 또는 다국간의 합의의 범위내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하는 허가를 내준다. 체약국은 이때 다른 노동자에 우선해서 허가하도록 유리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제54조 1. 재류와 취업허가의 규정하는 바 및 이 조약의 25조, 27조에서 정하는 권리를 손상시키는 일없이 이주노동자는 이하의 점에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 것으로 한다.

(a) 해고로부터의 보호

(b) 고용보험

(c) 실업대책사업에의 참가

(d) 이 조약의 52조의 범위내에서 실업 내지 취업이 종료할 때의 전직

2. 노동계약의 조항이 고용자에 의해 침해될 받아 이주노동자가 고충을 겪을 경우에는 이 조약의 18조 1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취업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유급활동을 허가받은 이주노동자는 허가조건인 범위내에서 그 유급활동의 수행에 관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 것으로 한다.

제56조 1. 이 조약의 본 제4부에서 말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않는다. 단, 그 추방이 국내의 법령에서 명시된 조약 제3부가 정하는 보호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재류 내지 취업 허가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추방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추방의 시비를 결정할 때에는 인도적인 견지와 그 사람이 취업국에서 체재한 기간의 길이가 고려되는 것으로 한다.

## 제5부 특별 형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규정

제57조 이 조약의 본 제5부에서 특히 규정된 특별 형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서 정규로 등록되거나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본조 제3부에서 정한 권리와 다음 조 이하의 수정을 포함한 제4부에서 정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58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a)에서 말하는 월경노동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 중, 그 사람이 취업국 영역내에서의 거주와 노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향유한다. 이때 그 사람이 취업국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고려되는 것으로 한다.

2. 취업국은 월경노동자가 일정기간 후에 유급활동을 선택할 자유를 승인하도록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이 권리의 승인이 그 사람이 월경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변동될 미치지 않는다.

제59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b)에서 말하는 계절노동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 중 그 사람의 취업국에서의 거주와 노동에 적용할 수 것으로 계절노동자로서의 재류자격에 적합한 것을 향유한다. 이때 그 사람이 취업국에 연간 일부만 거주하는 사람임이 고려된다.

2. 체약국은 본조 1항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장기간 그 영역내에서 취로해 온 계절노동자가 다른 유급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국간 및 다국간의 합의 범위내에서 입국신청에 대해 다른 노동자보다도 우대한다.

제60조 이 조약의 2조 2항 (e)에서 말하는 순회노동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 중 그 사람의 취업국 영역내에서의 거주와 노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회노동자로서의 재류자격에 적합한 것을 향유한다.

제61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f)에서 말하는 특정사업노동자와 그 가족은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한 권리가 보장된다. 단, 43조 1항 (b) 및 (c), 43조 1항 (d)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45조 1항 (b) 및 52조에서 55조까지의 권리는 제외한다.

2. 특정사업노동자가 그 사람의 노동계약의 조항이 고용자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을 때 이 조약의 18조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고용자를 관할하는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3. 체약국은 적용해야 할 이국간 합의에 따라 특정사업노동자가 그 사업에서 취로하고 있는 동안 출신국 또는 통과 거주국의 사회보장으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체약국은 이 점에서 권리의 부정 또는 지급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약의 47조의 규정 및 이국간 내지 다국간 합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국은 특정사업노동자의 임금을 출신국 내지 통과 거주국에서 지불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제62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g)에서 말하는 특별취업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단, 조약 43조 1항 (b) 및 (c), 43조 1항 (d)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52조, 54조 1항 (d)는 제외한다.

2. 특별취업자의 가족은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 중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관한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53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h)에서 말하는 자영취업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해진 권리를 보장받는다. 단, 고용자와 노동계약을 행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권리는 제외된다.

2. 이 조약의 52조 및 57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을 때는 자영취업자의 경제활동의 종료는 그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취업국에서의 체재 및 경제활동의 허가 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 그 사람의 재류가 특정의 유급활동과 결합되어 있음이 분명할 때는 제외한다.

## 제6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 공정, 인도적 동시에 합법적인 조건의 정비



제64조 1. 체약국은 이 조약의 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의 건전, 공정 동시에 인도적인 조건을 정비하는 관점에서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협의, 협력을 할 때는 노동력의 수요와 자원의 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타의 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 및 이주가 관련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절하게 배려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 1. 체약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을 행한다. 이 사업의 직무에는 이하의 것이 포함된다.

- (a) 이런 종류의 이주에 관한 정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것
  - (b) 이런 종류의 이주문제를 안고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정보교환, 협의 및 협력을 하는 것
  - (c) 국제이주 및 취업에 관한 정책, 법률, 규칙, 타국과의 합의 및 기타 관련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특히 고용자, 노동자 및 그 조직에 제공하는 것
  - (d)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출국, 이동, 도착, 체재, 유급활동, 출국과 귀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허가, 수속, 준비 및 취업국에서의 노동과 생활의 조건, 관세, 통화, 세금 및 기타 관계 법률에 관해서 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
2.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알맞은 영사관 기타 업무가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66조 1. 외국에서 취로하는 노동자를 모집하는 견지에서 업무 수행할 권리는 이하의 사람에 한해서 인정된다.

- (a)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공영의 공공사업 또는 기관
  - (b) 관계국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취업국의 공공사업 또는 기관
  - (c) 이국간 또는 다국간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
2. 관계하는 체약국의 법률과 관행에 기초해서 설립되고, 당국에 의한 허가, 승인 및 감독을 받는 알선업자, 준비단계에 있는 고용자 또는 그 대표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락된다.

제67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했거나, 재류 또는 취업 허가가 만기가 됐거나 혹은 취업국에서 부정규한 법적 지위로 됐을 때 그들의 출신국으로의 귀환이 질서로써 수행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관계하는 체약국은 적절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해서는 관계하는 체약국은 그 사람이 출신국에서 안정된 거주를 재현하는데 적당한 경제환경을 조장하고 출신국에서의 사회, 문화면에서의 영속적인 통합의 재현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관계국간에서 합의에 달한 바에 따라 적절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1. 체약국은 통과국도 포함해서 부정규한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불법 내지 비밀리의 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각국이 그 관할안에서 취할 수단에는 이하의 것이 포함된다.

- (a) 이주나 이민에 대해서 사람을 誤導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단
  -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불법 또는 비밀리의 이동을 발견하고 근절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이동을 조직하고 수행하고 혹은 이것을 조장하는 개인, 집단, 존재에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
  - (c) 부정규한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폭력, 협박, 위협을 가하는 개인, 집단, 존재에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
2. 취업국은 그 영역내에 있는 부정규한 법적 지위의 이주노동자에 의한 취로를 근절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적절한 경우는 고용자의 처벌도 이에 포함된다. 단, 이런 종류의 수단을 사용할 때 이주노동자가 고용자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서는 안된다.

제69조 1. 체약국은 그 영역내에 부정규한 법적 지위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거주할 때는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관계체약국이 국내법 및 이국간 또는 다국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합법화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입국 주변의 사정, 재류기간 기타 관련하는 고려되어야 할 사정, 특히 그 가족의 상태에 관한 사정에 적절한 배려를 해야만 한다.

제70조 체약국은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노동과 생활 조건이 적절, 안전, 건강의 기준 및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保持하도록 자국민에 적용되는 것을 하회하지 않는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71조 1. 체약국은 필요할 때에는 사망한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遺體를 출신국에 상환하는 편의를 도모한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사망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체약국은 문제가 조급히 해결되도록 관계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보상문제의 해결은 국내법, 이 조약 및 관련하는 이국간 또는 다국간의 합의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한다.

### 제7부 조약의 적용

제72조 1. (a) 이 조약의 적용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b) 위원회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했을 때는 10명의, 41번째의 체약국에서 효력을 발생한 후는 14명의, 덕망이 높고, 공정하며, 동시에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2. (a)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의 배분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특히 출신국과 취업국 사이에서 균형있게 행해지는 것 및 주요한 범형태가 대표되는 것을 고려에 넣어서 체약국에 의해 선거를 위해서 지명된 사람의 명부에서 체약국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각 체약국은 자국민 중에서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b)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 위원의 최초의 선거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행하고,



이후는 2년마다 행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의 선거일의 늦어도 4개월 전까지, 체약국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의 성명을 2개월전까지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사무총장은 지명된 사람의 알파벳순에 의한 명부(이들을 지명한 체약국명을 표시한 명부로 한다.)를 작성하고 명부를 늦어도 각 선거 1개월 전까지 지명된 사람의 경력을 첨부해서 체약국에 송부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국제연합 본부에 소집된 체약국 회의에서 행한다. 이 회합은 체약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한다. 이 회합에서는 출석하고 또 투표하는 체약국 대표에 의해 투표된 표의 최다수로 동시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지명된 사람으로써 위원회에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

5. (a)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명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이 5명의 위원을 최초 선거 후 즉시 그 선거를 행한 체약국 회의의 의장에 의해 예비 뽑기로 뽑는다.

(b) 위원회의 4명의 추가적인 위원 선거는 이 조약이 첫번째의 체약국에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 본조 2, 3 및 4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이때 선출된 추가적인 위원 중 2명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이 2명의 위원은 그 선거를 행한 체약국 회의의 의장에 의해 예비 뽑기로 뽑는다.

(c) 위원은, 재차 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자격을 갖는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선언했을 때는 그 전문가를 지명한 체약국은 그 잔여 임기에 대해 자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이 신규의 임명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조약에서 정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 및 편익을 제공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관련 규정에서 규정된 국제연합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편익,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73조 1. 체약국은 다음의 경우에서 이 조약의 실시를 위해 취한 입법상, 사법상, 행정상 및 기타의 조치에 관한 보고를 위원회에 의한 검토를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당해 체약국에 대해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b) 그 후는 5년마다 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보고에는 이 조약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요인과 장애를 기재한다. 보고에는 또한 당해 체약국이 안고 있는 국제이주의 이동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정보의 내용에 관해서 여기서 정하는 것 이외의 준칙을 결정한다.

4. 체약국은 자국의 보고를 국내에서 공중이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4조 1. 위원회는 체약국이 제출하는 보고를 심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그 나라로 송부한다. 그 나라는 본조에 기초해서 위원회가 행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고에 관해서 체약국에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정례 회의가 개최되는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체약국이 제출한 보고 사본과 보고의 검토에 관련하는 정보를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사무국이 기관의 권한 영역에 속하고 동시에 이 조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지식으로써 위원회를 원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더우기 위원회와의 협의 후 보고에 포함되는 사항 중 어느 한 전문기관 또는 국제기관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의 사본을 당해 전문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전문기관, 국제연합의 제기관, 정부간기관 기타 관련하는 기관에 요청해서 그 기관의 활동분야에 속하고 동시에 이 조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해 서면으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에 대해 협의자격으로써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6. 위원회는 특정의 전문기관, 국제연합의 제기관 내지 정부간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의 권한영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검토할 때에는 출석해서 청문에 응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7. 위원회는 이 조약의 실시상황에 대해 국제연합 총회에 년차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체약국에서 제출된 보고와 의견에 특히 기초를 두고, 위원회에 의한 고찰과 권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8.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년차보고서를 이 조약의 체약국, 국제연합의 경제사회 이사회 및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및 기타 관련 제기관에 송부한다.

제75조 1. 위원회는 수속 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임원을 2년의 임기로 선출한다.

3. 위원회는 원칙으로서 매년 회합한다.

4. 위원회의 회합은 원칙으로서 국제연합 본부에 두고 개최한다.

제76조 1. 이 조약의 체약국은 이 조약에 기초하는 의무가 다른 체약국에 의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어느 한 체약국으로부터의 통보를 수리하고 동시에 검토하는 권한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본조 규정에 기초해서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본조 규정에 기초하는 통보는 위원회의 당해 권한을 자국에 대해 인정하는 선언을 행한 체약국에 의한 통보인 경우에 한해 수리하고 동시에 검토할 수가 있다. 위원회는 선언을 행하지 않은 체약국에 대한 통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본조 규정에 의해 수리된 통보는 이하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a)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이 이 조약에 기초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보에 의해 그 사안에 대한 당해 체약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 체약국은 또한 사안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인정된다. 통보를 수리한 나라는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기타의 문서를, 통보를 송부한 나라에 제공한다. 이들 문서는 당해 사안에 대해 이미 취해졌거나, 현재 취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취할 수 있는 국내적인 수속 및 구제조치에 가능한 동시에 적절한 범위에서 언급해야만 한다.

(b) 최초의 통보를 수령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사안이 관계 체약국 쌍방이 만족하도록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체약국도 위원회 및 상대 체약국에 통보함으로써 당해



사안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안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인 구제조치가 취해졌거나 다 끝났는지를 확인한 후에 한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내법의 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안을 취급한다. 단, 구제조치의 실시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d) 본항 (c)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원회는 이 조약이 정하는 의무의 존중을 기초로 해서 사안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 체약국에 알선을 한다.

(e) 위원회는 본조에 의해 심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회 회합을 개최한다.

(f) 위원회는 본항 (b)에 기초해서 위임받은 어느 사안에 대해서나 본항 (b)에서 말하는 관계 체약국에 대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g) 본항 (b)에서 말하는 관계 체약국은 위원회에서 사안이 검토되는 동안은 대표를 출석시킬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하고, 또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본항 (b)의 통보를 수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를 제출한다.

(i) 본항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사실 및 도달한 해결에 대해 간결하게 기술한 것을 보고한다.

(ii) 본항 (d)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관계 체약국간의 논쟁을 통해 관련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한다. 당해 보고에 관계 체약국의 구두에 의한 의견의 기록 및 서면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위원회는 관계 체약국에 한해서 논쟁 점과 관련한다고 여겨지는 견해를 통지할 수 있다.

어느 사안이든 보고는 관계 체약국에 통지된다.

2. 본조의 규정은 이 조약의 체약국 중 10개국 이 1항의 규정에 기초하는 선언을 행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체약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寄託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체약국에 송부한다.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보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송부된 통보에 의한 어떤 사안의 검토도 방해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이 선언의 철회 통고를 수령한 후는 당해 체약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체약국에 의한 통보도 수리하지 않는다.

제77조 1. 체약국은 그 관할하에 있는 개인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조약에서 정하는 어느 한 개인적인 권리가 그 체약국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의 통보를 위원회가 수리하고 동시에 검토할 권리를 가진 것을 인정하는 뜻의 선언을 본조에 기초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선언을 행하지 않는 체약국에 관한 어떤 통보도 수리해서는 안된다.

2. 위원회는 본조에 기초한 통보로 익명의 것, 또는 통보 제출의 권리 남용이거나 이 조약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수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3. 위원회는 다음의 것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검토하지 않는다.

(a) 동일의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하에서 심의되지 않는 것.

(b) 당해 개인이 이용할 수 모든 것의 국내적 구제조치를 다 한 것. 이것은 위원회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원회는 본조에 의해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해서 본조 1항의 것으로 선언을 행하고 동시에 이 조약의 어느 한 규정을 침해한다고 주

장되고 있는 체약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통보를 받은 체약국은 6개월 이내에 문제를 명백히 하고 동시에 그 나라에 의해 취해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밝히는 설명서 또는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개인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및 관계 체약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비추어서 본조에 의해 수리된 통보를 검토한다.

6. 위원회는 본조에 의한 통보를 검토할 때에는 합의를 비공개로 한다.

7. 위원회는 관계 체약국 및 개인에 그 각서를 송부한다.

8. 본조의 규정은 이 조약의 체약국 중 10개국이 1항의 규정에 기초한 선언을 행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체약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것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체약국에 송부한다.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송부된 통보에 의한 어떠한 사안의 검토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무총장이 선언의 철회 통고를 수령한 후는 당해 체약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개인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에 의한 어떠한 통보도 본조의 것으로 수리되지 않는다.

제78조 이 조약의 76조 규정은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의 기본문서 또는 이들 기관에 의해 채택되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 또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타수속을 방해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당사국간에 효력 있는 국제 합의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수단에 호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8부 일반조항

제79조 이 조약은 체약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입국을 인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체약국은 이 조약이 정하는 제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80조 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 및 이 조약이 다루는 사항에 관련되어 각각이 지는 직책을 정하는 국제연합의 제기관 및 전문기관의 헌장 규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81조 1. 이 조약은 이하의 것에 의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의해 가일충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는 때에 그것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a) 체약국의 법률 또한 관습

(b) 체약국에서 효력을 갖는 이국간 또는 다국간 조약

2. 이 조약의 어떠한 부분도 그 어느 나라, 집단, 개인이, 조약이 정하는 권리와 자유를 해치는 행위를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82조 이 조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폐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포기시키고 혹은 인정하지 않은 채 방지시킬 목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압력을 가함은 어떤 형태의 것이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계약에 의해 이 조약이 인정한 권리보장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 계약국은 이상의 원칙 존중이 확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83조 이 조약의 계약국은 이하의 조치를 취한다.

(a)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 내지 자유를 침해당했을 경우에 효과적인 구제가 행해지도록 확보할 것. 침해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졌을 때도 이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b) 이런 종류의 구제를 제기했을 경우, 권한있는 사법, 행정, 입법 기타 국내법이 정하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주장을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확보하고, 사법심사의 기회를 확대할 것.

(c) 구제가 인정되었을 때에 당해 권한있는 기관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

제84조 계약국은 이 조약의 집행에 필요한 입법조치 기타 조치를 행한다.

## 제9부 최종 규정

제85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기탁자로서 지명된다.

제86조 1. 이 조약은 모든 나라에 의한 서명을 위해 개방해 놓는다.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조약은 모든 나라에 의한 가입을 위해서 개방해 놓는다.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87조 1. 이 조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는 비준 또는 가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당해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8조 이 조약에 대해서 비준 또는 가입하는 나라는 조약의 그 어느 부의 적용을 피하거나 그 어떤 특별 형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단, 이것에 의해 조약 3조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제89조 1. 어느 계약국도 자국에 대해서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면 통지에 의해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전항의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폐기는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보다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계약국을 이 조약에서 기초하는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폐기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검토가 계속할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계약국의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후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당해 나라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사안의 검토도 시작해서는 안된다.

제90조 1. 이 조약이 효력을 발하고 나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는 어느 계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면 통지에 의해 언제든지 이 조약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 개정 제안을 모든 계약국에 통지하고 계약국에 의한 개정안 심의 및 투표를 위한 회의 개최의 찬부를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사무총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은 후 4개월 이내에 계약국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최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있어서 출석하고 동시에 투표하는 계약국의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해서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조약의 개정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받고, 동시에 계약국 중 3분의 2이상의 나라에서 각각의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락됐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이 효력을 발생했을 때에는 수락한 계약국은 그것에 구속된다. 수락하지 않은 계약국은 이 조약 및 그것 이전에 행해진 개정으로 자국이 수락한 것에 구속된다.

제9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서명, 비준, 가입을 할 때 행해진 유보의 서면을 수령하고 동시에 모든 나라에 송부한다.

2. 이 조약의 취지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그 철회를 모든 나라에 통고한다. 이 통고는 수령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92조 1.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계약국간의 분쟁에서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느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중재에 부친다. 중재 요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의 조직에 대해서 분쟁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분쟁 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위임할 수 있다.

2. 각 계약국은 이 조약의 서명 혹은 비준 또는 이 조약에 가입을 할 때 전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다른 계약국은 그러한 선언을 행한 계약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3.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언을 행한 계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93조 1. 이 조약은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하게 正文으로 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나라에 대해 송부한다.